

# 목차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교육과정 .....	2
1회차 : 협동조합의 이해(협동조합 정체성 이해) .....	5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강민수 사무국장	
2회차 : 협동조합의 이해(철학과 역사) .....	31
-성남이로운재단 장건 이사장	
5회차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	45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동연 교육부장	
8회차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	65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범용 팀장	
9회차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87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김선기 사무국장	
10회차 : 세계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최근 흐름 .....	107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장종익 교수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교육과정

- 교육명 :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교육과정 중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과정”
- 교육기관 : 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목표
  - 협동조합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 다양한 사례연구와 실습을 통해 협동조합을 쉽게 이해하고 우리 일상속에 협동 조합이 함께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 협동조합운동의 비전을 공부, 토론하면서 지역 협동사회의 연대 틀을 모색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을 준비중인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정신과 운영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일시
  - 화요반 : 6월 19일 ~ 9월 7일, 매주 화요일 16시~19시(3시간)
  - 목요반 : 6월 21일 ~ 9월 7일, 매주 목요일 16시~19시(3시간)
  - 시간 : 총 72시간 (36시간X2반)  
※ 동일한 교육과정을 화요반, 목요반 2개반으로 나누어서 진행
- 장소
  - 성남시청 3층 율동관 or 모란관
- 대상 :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성남시민 30명(반별)

○ 일정표

일정			강의명	강사
회차	화요반	목요반		
1회차	6.19	6.21	○ 입학식 (15:30~16:00) ○ 협동조합의 이해 I - 협동조합 정체성 이해 (정의, 가치, 원칙)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강민수 사무국장
2회차	6.26	6.28	○ 협동조합의 이해 II - 협동조합의 역사와 철학 바로알기	성남이로운재단 장건 이사장
3회차	7.2(월)		○ 한국사회 내 협동조합운동의 필요성과 기본법 해설 - 살림의 경제 포럼과 같이 진행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4회차	7.10	7.12	○ [사례1] 성남시 협동사회경제 현황과 주요 사례	주민생협 최민경 상무이사
5회차	7.17	7.19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동연 교육부장
6회차	7.24	7.26	○ [사례2] 국내외 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한살림성남용인생협 윤형근 상임이사
7회차	7.31	8.2	○ 협동조합 유형별 운영원리 -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협동조합 등등..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주희 연구원
8회차	8.7	8.9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범용 팀장
9회차	8.14	8.16	○ [사례3]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김선기 사무국장
10회차	8.21	8.23	○ 세계 협동조합의 흐름과 전망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장종익 교수
11회차	8.28	8.30	○ 협동조합 교육과 협동인의 커뮤니케이션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동연 교육부장
12회차	9.4	9.6	○ [실습] 협동조합 마을 만들기 - 우리지역의 협동조합 찾기, 협동조합 마을 만들기	주민생협 최민경 상무이사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동연 교육부장
수료식	9.7(금)		○ 수료식	
총12차			72시간 (36시간 X 2반)	



협동조합의 이해

# 협동조합 정체성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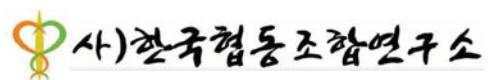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강민수 사무국장



CCI

#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 정체성 이해)

2012. 6



[www.coops.or.kr](http://www.coops.or.kr)

## 교육 순서

1 왜 협동조합인가?

2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3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4 나의 꿈

왜 협동조합인가?

# 왜 협동조합인가?

왜 협동조합인가?

■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왜 협동조합인가?

● 위기의 시대, UN은 왜 협동조합을?



VS



왜 협동조합인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장 유력한 조직형태

● 단순한 사회경제 단계

● 복잡한 사회경제 단계

경제영역

하이브리드영역

사회영역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영리기업 규율

인적결사체 기업의 규율

비영리조직 규율

사익(私益)

공익(共益)

공익(公益)

공익(公益)

주식회사 등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협동조합은 상법과 민법의 빈틈을 채워주는 연결고리

## 왜 협동조합인가?

### ■ 우리나라 협동조합 – 12,607개

#### 1유형 : 법적기반 존재. 생산자협동조합 – 1,405개

- 농협[축협], 수협, 산림조합, (업연초협동조합)

#### 2유형 : 법적기반 존재. 생산자외 협동조합 – 2,582개

-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 3유형 협동조합 : 협동조합 관련법 미비 – 5,355개

-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영농 ■영어조합법인

#### 4유형 협동조합 : 협동조합 관련법 부재 – 3,265개

- 자활공동체, 대안기업연합회, 돌봄노동네트워크 등

## 왜 협동조합인가?

### ■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소분류	설명	개소수	비율	협동조합	비율	소계
노동통합형	장애인, 고령자 등 한계노동자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곳	81	16.2%	사회적 협동조합형	34.3%	172
공익추구형	상품과 서비스의 대상을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으로 한정	91	18.2%			
고용추구형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곳	243	48.5%	노동자 협동조합형	51.7%	259
혁신인력형	다수의 전문인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곳	16	3.2%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86.0%	431
혁신기술형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	19	3.8%	혁신기업형	14.0%	70
아이디어형	독특한 아이디어로 상품이나 프로세스 혁신을 이룬 곳	51	10.2%			
합계		501	100.0%		100.0%	501

왜 협동조합인가?

---

“협동조합이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착한 대안의 하나이다.”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죄수의 딜레마

구분	용의자 B의 침묵	용의자 B의 자백
용의자 A의 침묵	용의자 A, B 각자 6개월씩 복역	용의자 A 10년 복역, 죄수 B 석방
용의자 A의 자백	용의자 A 석방, 죄수 B 10년 복역	용의자 A, B 각자 5년씩 복역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언제나 협동(침묵) 보다는 배신(자백)을 택하게 됨  
그래서 인간은 협동 할 수 없다는 결론

##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협동의 의미

규칙 10,000원을 나와 다른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게임

내가 상대방에서 얼마를 줄지를 결정

상대방은 나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 할 수 있음

상대방이 나의 제안을 거부하면 둘 다 한 푼도 가질 수 없음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 공유지의 비극

바다에서 물고기가 남획되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거나 사  
유화하는 것이 효율적 방법  
그런데 어떻게 인간은 멸망하지 않고 공유지를  
관리 해 올 수 있었을까?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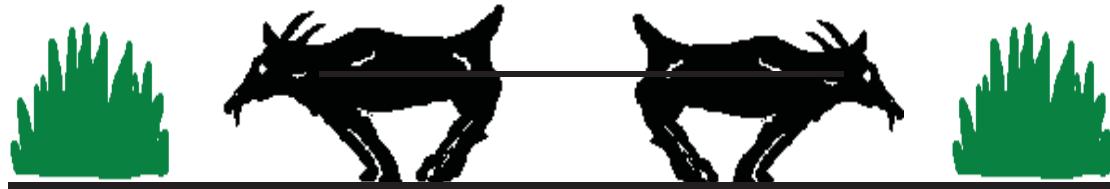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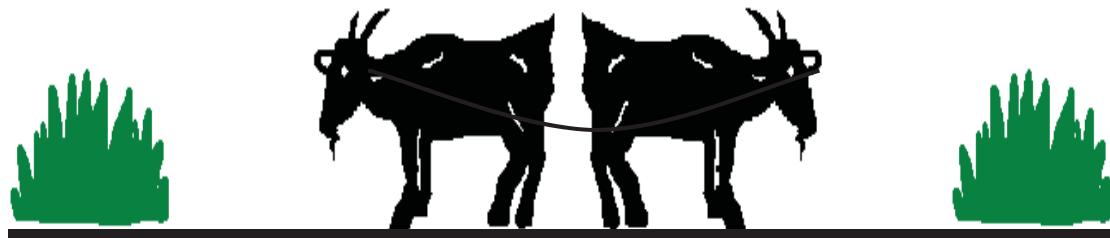
---

인간은 실패와 성공과 같은 상황을 통해 학습하는 존재  
이로부터 인간은 모든 딜레마를 탈출하여 오늘에 이를 수  
있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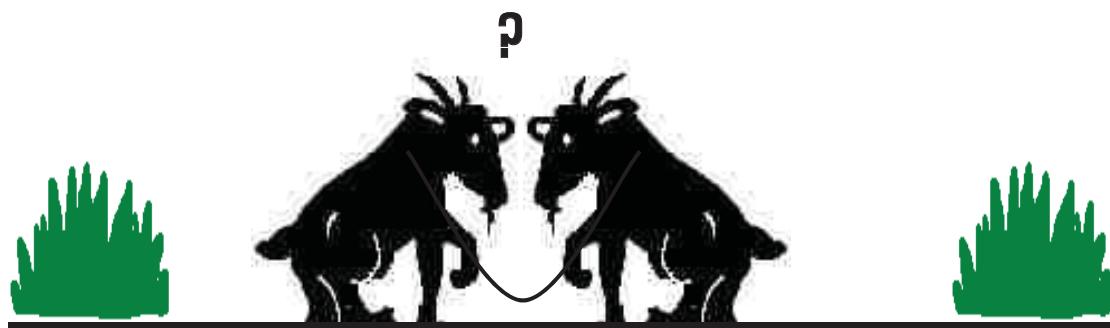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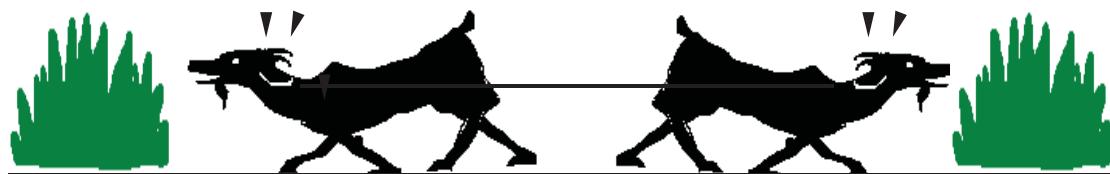
모두가 협동하는 한 자신도 협동한다는 조건부 전략을 채  
택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감시와 제재 활동에 나선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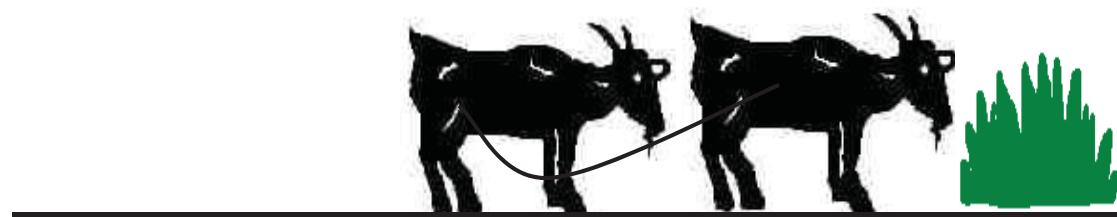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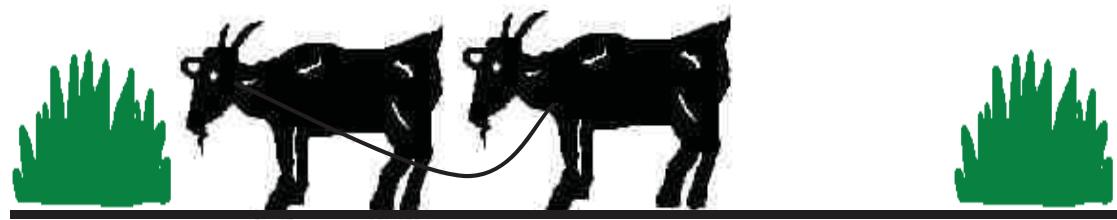
## 협동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의 정의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

### 협동조합의 정의

#### 방법

- 공동으로 소유하고
-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 수단

- 사업체를 통하여

#### 목적

-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 주체

-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 성격

- 자율적인 조직

## 협동조합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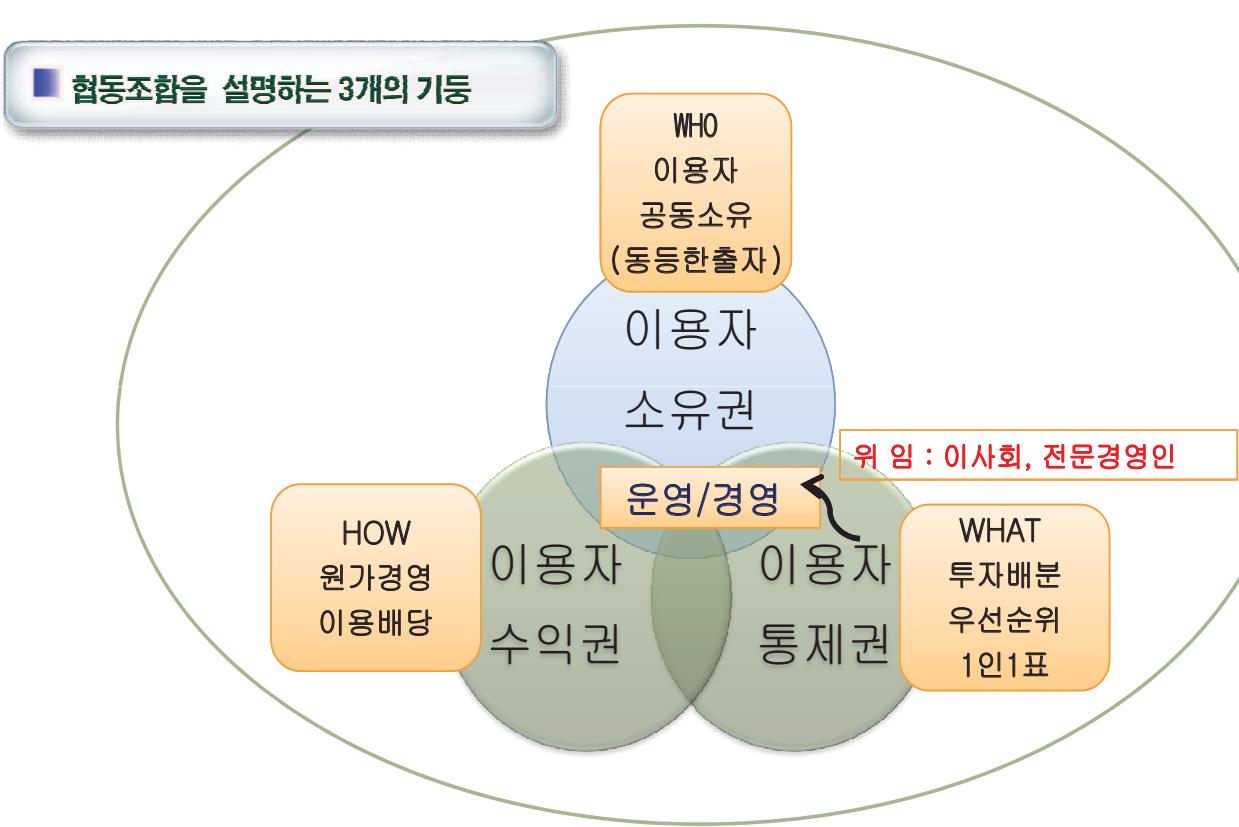


협동조합은 떡 자르기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의 가치

- 자조와 자기책임(Self-help and Self-responsibility) :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에 근거
- 민주주의 (Democracy) : 개인의 발전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공동행동 및 상호책임을 통해서 시장 및 정부에 결집된 영향력 발휘함
- 평등(Equality) : 조합의 주체이자 기초는 조합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평등한 인적 결합에 기초함. 조합 참여 기회의 평등 및 의사결정 권한의 평등
- 공정(Equity) ; 이용액 배당 또는 출자 배당 등 조합 참여 대가에서 공정한 대우
- 연대(Solidarity) : 조합원의 공동 편익 증대를 위한 책임을 지님. 조합의 재정적 사회적 자산이 공동행동의 결과 얻어진 조합원 모두의 것 인식. 또한 지역 및 전국 단위, 나아가 국제적으로 단결해야 함.

# 협동조합의 장점과 어려움

"취업 안되니 창업" ..신설법인 9년만에 최고

재취업마저 '꽁꽁'..베이비부머 50대 창업 20.8% 급증

이데일리 | 이윤정 | 입력 2012.02.27 15:02

댓글 29 개 | 누기봤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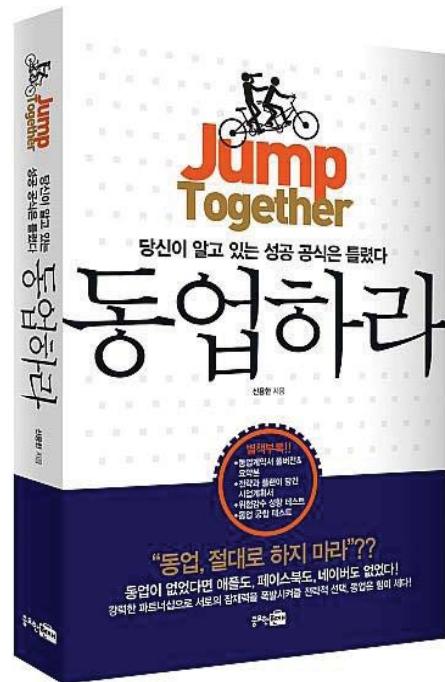
가 | + | - | ☐ | ☒ | ☓ |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1월중 신설법인수가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구직인구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재취업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갈 곳을 잃은 50대의 창업이 크게 늘었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설법인은 총 6005개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6.1%(334개) 증가했다. 1월 실적으로는 2003년 이래 최고치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 협동조합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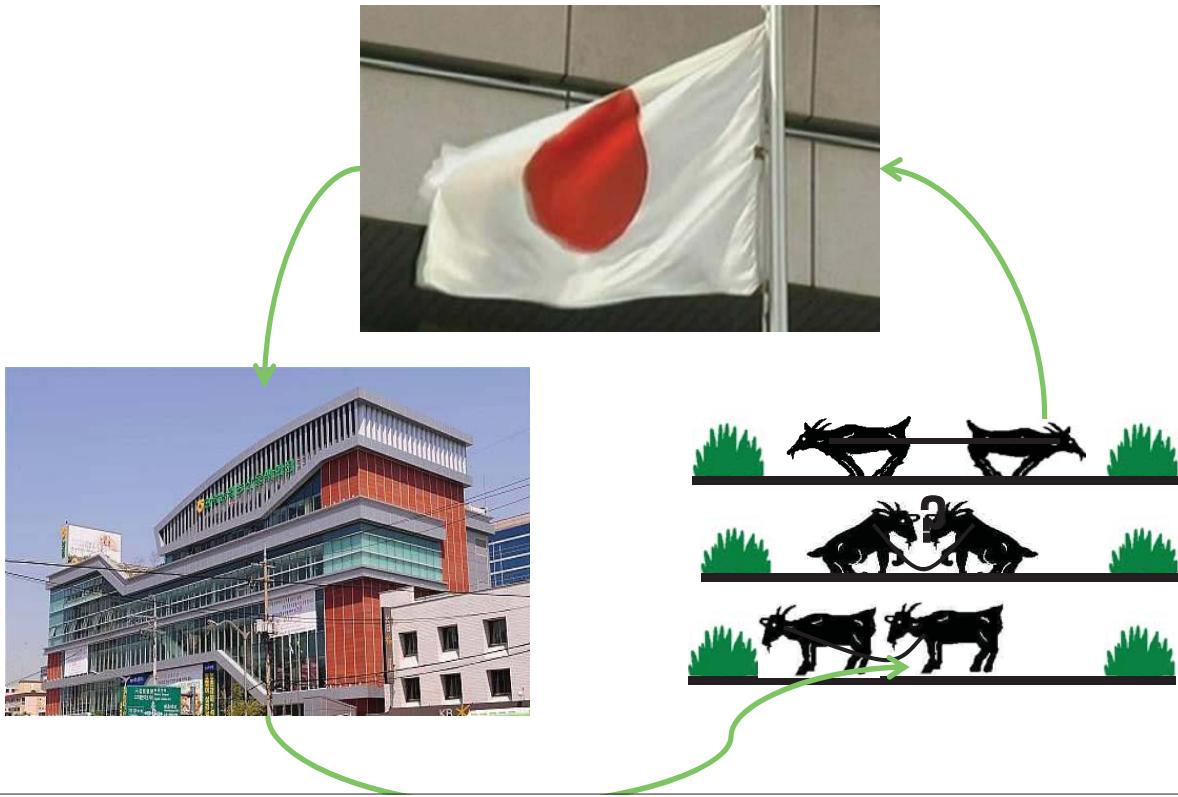


계약서보다 관계를 믿고, 토론과 논쟁보다 의리와 정이 중요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의 가치



## 성공하는 협동조합 원칙

# 성공하는 협동조합 원칙

## 성공하는 협동조합 원칙



###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1 가입의 자유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2 민주적 관리 (Democratic Control)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4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5 교육, 훈련 및 홍보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6 협동조합간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 성공하는 협동조합 원칙

###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전제 – 자각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피고용자들은 '작업을 수행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행동'하고  
그 일의 목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성공하는 협동조합 원칙

###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조건 – 조합원의 동질성 확보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조합원의 동질성 확보
-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
- 협동의 이익은 무엇인가?

## 성공하는 협동조합 원칙

###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 아름다운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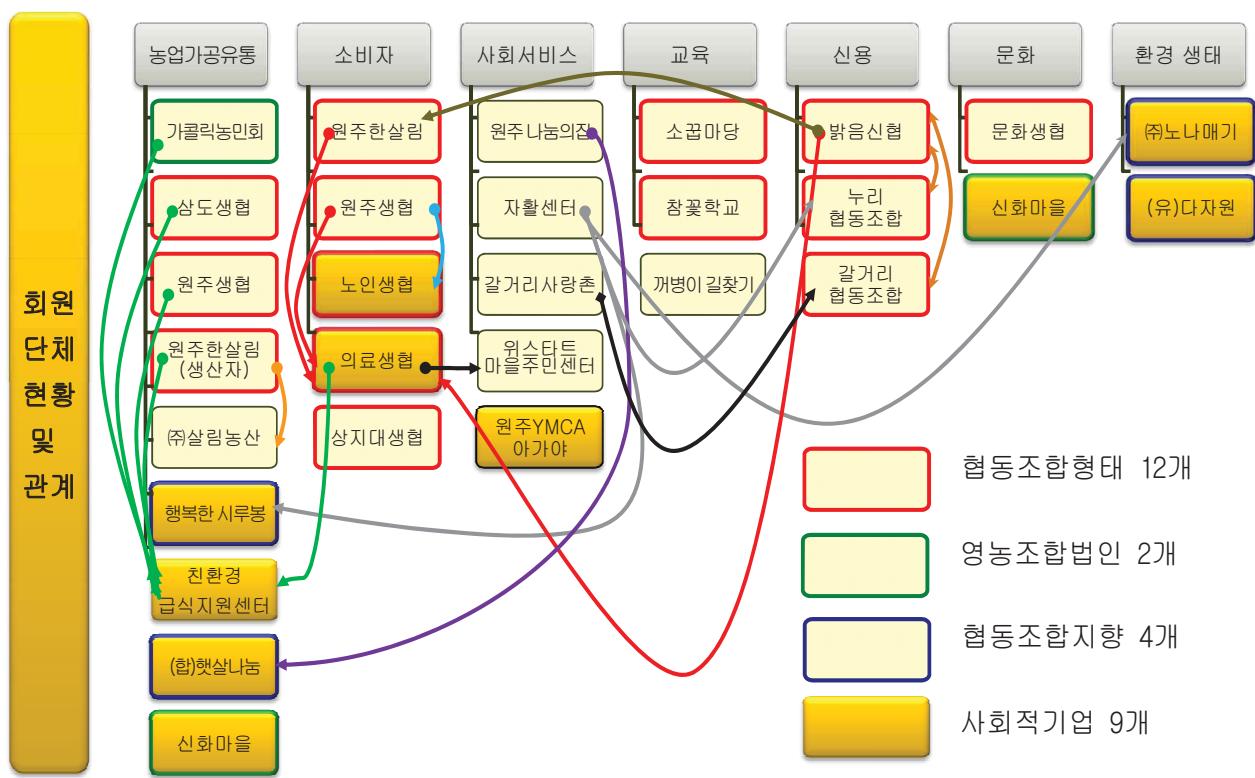
- 재를 만들지 않고 불을 피울 수는 없다.

## 성공하는 협동조합 원칙

###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 성공하는 협동조합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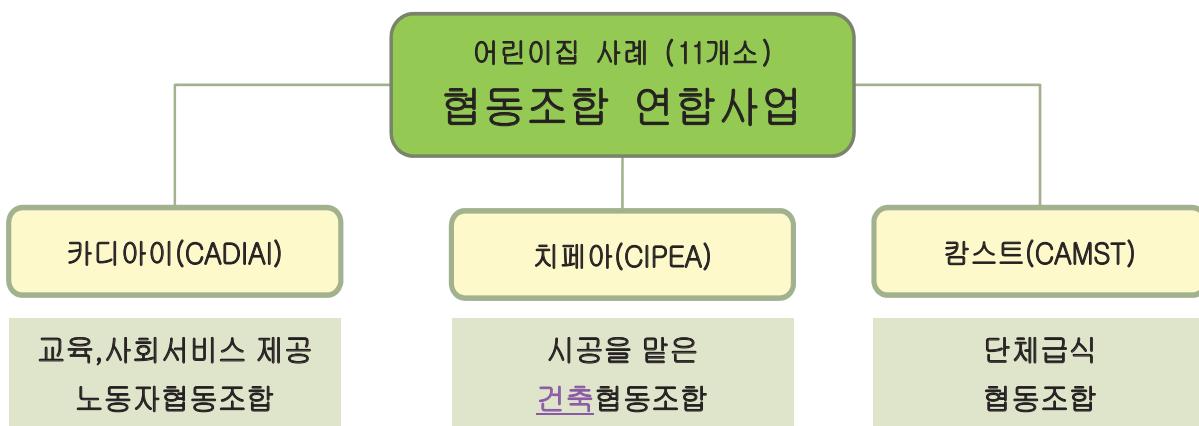


## 성공하는 협동조합 원칙

에밀리아로마냐주 총생산의 30%, 8000개의 협동조합이 창출

- 주도인 볼로냐 같은 도시지역의 협동조합 경제 비중은 최고 45% -

협동조합 경제가 대안을 넘어 주류경제가 된 힘은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 성공하는 협동조합 원칙

### 협동조합의 정체성(본질)



• 정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 충족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 결성한  
자율조직체

• 가치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공정, 연대를 토대

• 원칙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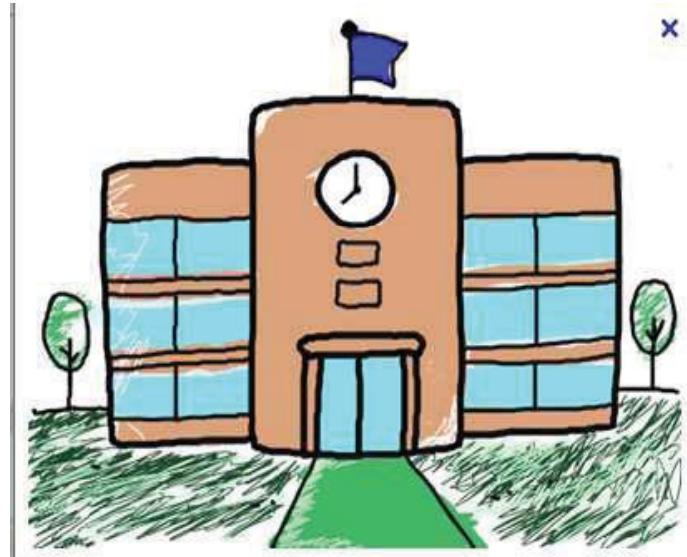
내가 꿈꾸는 협동조합

# 내가 꿈꾸는 협동조합

내가 꿈꾸는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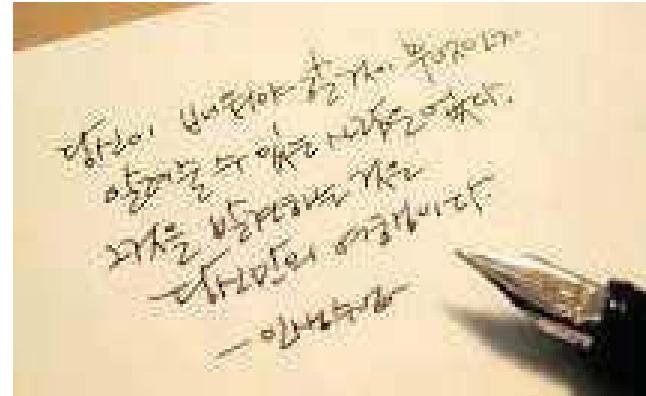
## 내가 꿈꾸는 협동조합



## 내가 꿈꾸는 협동조합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뉴스게릴라들의 뉴스연대**  
**OhmyNews**

# 교/육/후/기



- 오늘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협동조합의 이해

# 철학과 역사

성남이로운재단 장건 이사장



# 협동조합의 이해

## -철학과 역사-

### 장 건

#### 1. 협동조합의 철학

##### 천부적 인간 본성

오래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란 바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 같다.”라는 철학적 언사를 하였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는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협동과 경쟁의 균형이 계속 작용하면서 아이들은 성장한다.

##### 협동과 경쟁

협동조합에는 협동(cooperation)이란 말이 들어 있다. 인간이 협동을 하는 동기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이 있다. 그 가운데 인류의 가장 뛰어난 지적유산의 하나인 진화론을 쓴 다윈을 죽을 때까지 괴롭힌 과제가 협동이었다. 그의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오직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 적자생존하며 진화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례에서 동물들은 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끝내 협동의 조건을 파헤치지는 못하였지만 협동하는 집단이 더 우월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생물학적인 원인에서 바라보면 이타심에 충동을 느끼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유전자적으로 유사하다고 한다. 심리학 이론에서도 사회적 교류, 즉 협동은 상호 신뢰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신뢰가 있으면 협동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물론 이들 이론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과정=협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한 부분일 뿐이다.

경쟁, 또는 협동에의 충동이라는 인간의 본질은 이미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시대, 초기 시장 옹호자들에게서 사회 전체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하거나 뭉치는 특징을 가진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고전파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문제 제기이기도 하였다. 그는 더 나은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윤리적인 길을 탐구하며 특권 남용,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 그리고 부당한 수입을 경멸하였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자유시장은 단지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연대와 관용, 그리고 국가의 의의를 포함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협동조합의 철학적 기초

협동조합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는 주요 종교의 교리에서도 볼 수 있다. 티벳 불교의 21명상은 완전한 자유와 정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의 협동조합 연구자 마다브 마다네(Madhav Madane) 교수에 따르면 힌두교의 정신인 베다 사회는 민주주의, 법치, 평등, 자기결정권의 자유, 지식 찬양, 명예 및 자유 보호,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사회, 사회적인 국가,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통치규정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이슬람은 상호의존과 평등 원칙을 무척 중요하게 인식한다. 기독교의 토대는 사랑, 신뢰와 관용, 그리고 지식과 상호부조의 추구이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인간의 존엄(인본주의), 상호자조(공동체적호혜), 경제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철학적 기초를 토대로 발전하고 있다.

## 2. 협동조합의 정체성

###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선언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1980년 제 27회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모스크바 대회에서 보고된 레이드로 보고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에서 캐나다의 레이드로 박사는 협동조합 기업이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왔는데, 다른 기업과 같은 사업방식과 수단을 사용하며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성공 이상은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자문하고 협동조합의 진정한 목적(협동조합다운),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는 중이라며 “사상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그는 지난 100여 년간의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즉 협동조합 운동의 보편성과 함께 그것이 절대적 빈곤을 완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크지만 이제는 변화의 요구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이 거대화 일반화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본래의 가치 또는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조합원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는 점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도대체 협동조합 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아가 협동조합운동이 조합원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현대사회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네 가지 과제, 즉 첫째 식량문제의 해결과 기아 극복, 둘째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 셋째 환경보전에 의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 넷째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대한 기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1980년 레이드로 박사가 문제 제기를 한 이후,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국제협동조합연맹 100주년 총회에서 「21세기 협동조합의 원칙」이라는 협동조합

의 정체성에 관한 문건이 정리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 수록되어 있다.

###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결사체)이다.』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결사체이다”(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이 말은 협동조합 정의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말로서, 협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단 한마디 말로 규정한 것이다.

협동조합 정의에서 말하는 자율(autonomous)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자율(self)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는 자율이다. 결사체(조직 association)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결사체란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한 단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 및 직능 단체, 학교, 병원, 교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동아리 등이 모두 결사체에 포함된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결사체다” 했을 때의 결사체는,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보통의 결사체와는 다른 면이 있다. 결사체를 이루는 조건은, ‘자유롭고 자립한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자유롭고 자립한 사람들의 연대’로서의 자발적인 시민 결사체, 그 가운데서도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형 시민결사체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과제별로 전개하는 운동,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운동이다.

위 정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정부 및 사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공적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국영기업이나 공기업과는 다른 존재이며, 사적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사기업과도 전혀 다른 존재이다. 협동조합은 조합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결성되고 이것을 씨앗자금 삼아 운영된다.

둘째,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결성한 조직(결사체)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결사체)이다.’했을 때의 ‘사

람들’은, 앞부분의 ‘자발적으로 결합한’ 주체도 사람이고 뒷부분의 ‘자율적인 결사체’가 되게 하는 주체도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결사체에는 사람이 결합한 결사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 중에는 개인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단위 조합이 있는 반면, 법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 단위 협동조합도 있다. 연합 단계의 협동조합은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 이든 협동조합의 민주적 실천의 본질은 사람=조합원(회원 조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여러 조직에는 돈이 모여 만든 결사체도 있고, 권위가 모여 만든 결사체도 있다.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회사이고,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국가이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은 돈의 결사체도 아니고, 권위의 결사체도 아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자발적인 시민결사체라 하는 것이다. 물론 협동조합에도 돈은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돈이나 권위가 아닌 사람이 주체인 결사체이다. 돈과 권위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주체는 사람이다.

셋째,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가입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과 능력 내에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 욕구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욕구로까지 확대된다. 미래에는 협동조합이 문화적, 지적, 정신적 측면에서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제공하는 일이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목적이다.

다섯째,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공동으로 소유하고’는 조합원에게 부여된 공동 소유의 의무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는 조합원에게 부여된 운영 참여의 의무이며,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하는’은 조합원에게 부여된 사업 이용의 의무이다. 소유와 운영과 이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운영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합원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 협동조합의 가치

ICA 100주년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의에 뒤이어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정하여 선언했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협동조합이 기반을 둔 기본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100여 년 이상 설왕설래했던 여러 논의를 정리한다는 성격이 있었다. 협동조합의 가치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보고서는 1992년 총회에서 스웨덴의 저명한 연구자 베크가 제출했던 「변화하는 세계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였다. 이 연구가 정리되어 1995년 100주년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채택하였다.

『협동조합은 자조(自助),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정체성 선언문의 가치에 관한 첫 단락에는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라고 쓰여 있다.

1. 일반적으로 “자조”에 관하여 말할 경우, 이 개념은 인간은 모두 자신의 운명을 여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인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협동이 불가결하다고 믿는다. 개인만의 노력으로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함께 행동하고 더불어 지는 책임을 통해서, 특히 시장 또는 정부에 대하여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인간은 더욱 많은 것을 달성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동료 조합원을 이해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광범한 사회에 관해 깊이 통찰함으로써 공동의 행동을 통하여 성장한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는 교육과 발달을 촉진하는 조직이다.

2. “자기책임”이란 우선 조합원이 자신들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활력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조합원은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협동조합을 알리고 가입을 권유하는 책임을 가진다. 또한 “자기책임”은 자신들의 협동조합이 여타 공적·사적 조직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도록 조합원이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민주”, “평등”的 가치는 협동조합의 100여 년 역사에서 언제나 강조되어온 가장 기본적 가치이다. 협동조합은 “평등”에 기초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초 단위는 조합원이다. 이 경우의 조합원이란 사람 또는 인적 집합체를 말한다. 어느 쪽이 되더라도 인간을 기초로 삼는다는 점이 바로 협동조합과 자본의 이익을 제일로 보는 기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특징이다. 조합원은 참가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조합원은 조직에서 가능한 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점은 때로는 대규모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연합조직 같은 경우에는 곤란한 과제였다. 실제로 평등을 이루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협동조합에 있어서 계속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평등”은 가장 간결하게 규약을 표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업을 행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4.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중에서 “형평성(공정)”을 관철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끝이 없는 과제이다. “형평성(공정)”이란 협동조합 내에서 조합원이 어떻게 취급 받는가라는 과제이다. 이 점에서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참가하는데 있어 대가면에서 공정하며, 일상적으로 이용금액의 배당과 조합원 명의의 출자금 적립, 이용대금의 할인이라는 형태로 공정한 대가가 주어진다.

5.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가치는 “연대”이다. 이 가치는 국제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 오랜 기간 신성하게 다루어진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에 있어서 “연대”的 가치는 협동조합활동이 한정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위장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조합원은 모든 조합원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을 진다. 또한 항상 모두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협동조합과 관계하는 비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비조합원 구별없이) 직원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을 진다. 또한 “연대”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집단적 이익에 책임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집단적 힘과 상호책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연대”란 협동조합인과 협동조합이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지역이나 전국, 광역 혹은 국제적 수준으로 단결하여 협동조합운동을 창조하기를 열망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실천적인 방법으로 협동한다. 협동조합은 시민과 정부에 대하여 공동의 모습을 보이도록 협동한다. 협동조합은 각 조합의 목적의 차이와 배경의 달리에도 상관없이 모든 협동조합 사이에는 공통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끝으로 “연대”는 협동조합 사상의 핵심이며 두 가지 기본적 개념인 자조와 상조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사상은 협동조합을 다른 경제조직 형태와 구별한다.

정체성 선언문의 가치 제2단락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1. 모든 위대한 운동의 기원에는 “선구자”로 현저한 공헌을 한 탁월한 사람이 있었다.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라는 말은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최대 다수 최대행복’ 공리주의 벤담,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공상적 사회주의자 로버트 오언(Robert Owen), 로치데일의 선구자들, 프리드리히 라이파이젠(Friedrich Wilhelm Raiffeisen), 헤르만 술체 데리체(Herman Schulze-Delitzsch), 필립 뷔셰(Philippe Buchez), 그룬트비(N.F.S. Grundtvig), 그리고 알퐁스 데잘딩(Alphonse Desjardins)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창설을 도운 운동내부에서도 존경받고,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인의 칭송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들의 공헌은 지극히 실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가 중요하다는 점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란 점이다.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협동조합운동에는 선구자가 있으며 그들의 실천적이며 윤리적인 가치는 지금까지도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선구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협동조합이 열망하는 윤리적 가치는 일부 자본이 지배하는 조직이나 정부 소유 기관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일반성

만을 가지고 이 가치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가치는 협동조합의 전통에서 보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세기에 각종 협동조합이 등장했던 무렵 윤리적 가치는 한층 중요한 것이었다. 그 후 협동종합운동의 성장과 발전에 책임을 지닌 많은 사람들에게도 윤리적 가치가 갖고 있는 본질적 중요성은 명백한 것이었다.

3. 19세기 초, 많은 협동조합은 “정직”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었다. 실제로 이 가치를 위하여 그 당시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행한 노력은 두드러졌다. 그런 사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며, 그들은 무엇보다도 정직한 계량, 고품질, 공정한 가격을 주장하였다. 노동자협동조합은 그 운동의 역사를 통하여 정직한 경영공개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협동조합은 사업에서, 특히 이자 계산을 정직하게 행하여 세계에서 훌륭한 평판을 받았다. 농업협동조합은 정직한 표시를 부착한 품질 높은 농산물 출하에 매진함으로써 긴 세월동안 번영 하였다.

4. 또한 정직에 관한 특별한 전통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정직한 거래를 해 왔으며, 특히 이 가치는 비조합원과 정직한 거래로 확대되었다. 같은 이유로 협동조합은 “공개”를 지향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시민, 특히 정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활동에 관한 대량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공성을 가진 조직이 되었다.

5. 나머지 두 가지 윤리적 가치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점에서 발생하는 가치이다. 즉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열려 있으며, 구성원 개개인의 자조를 돋기 위하여 활동한다. 협동조합은 하나 또는 복수의 지역 사회에 걸쳐 존재하는 어느 정도 집단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많은 개인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협동조합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갖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협동조합은 재정적 역량의 범위 안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왔다. 많은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대하여 인적·재정적 자원으로 중요한 공헌을 해 왔으며, 다수의 협동조합은 개발도상국의 여러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인이 자랑할 만한 전통이며 강조할 만한 가치이다.

6. 단적으로 말하자면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는 어떤 종류의 조직에서도 지니는 가치이지만 협동조합 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설득력 있으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다.

## 협동조합의 7대 원칙

7대 원칙은 1995년 100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역사에서 세 번째 발표된 원칙이다.

### 1) 자발적이고 열려진 조합원 제도

- 2) 조합원의 민주적인 운영 및 관리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4) 자율과 독립
- 5) 교육, 훈련 및 정보의 제공
-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3. 협동조합의 역사

#### (1) 자본주의 사회의 탄생

- 1770년대부터 1830년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자본제 생산양식 완성. 그 변화 속에 협동사회 이념과 그것에 바탕한 협동조합운동 발생
- 산업혁명-대량생산 기계제 공업화(산업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형성, 자본, 임노동 생산구조의 자본제 생산양식 완성
- 노동자-낮은 임금, 장시간노동, 임금노예화, 소비생활상 채무노예화
- 노자모순-이윤중심사회에 맞서 새로운 사회 건설 사상, 운동 태동
- 19세기 전반 아동노동 철폐와 사회개혁 차원 러다이트(기계파괴)운동 전개, 노동가치 하락이 기계의 출현에 있다고 본 러다이트운동 실패, 자본 지배라는 근본 인식으로 전환 계기-노동자의 자본 대항운동으로 사회운동 전환
- 이후 노동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서 소비자협동조합운동과 노동자계급 주도 정치개혁운동으로서 차티스트운동의 양방향으로 급격한 전환.

#### (2) 협동조합의 출발

- 러다이트운동을 전개했으나 실패 후 새로운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모색하는 로버트 오웬(1777-1858, 영국) 등장. 29세 방적공장 사장. 1800년 영국 뉴라나크에서 일종의 소비조합을 만들고, 미국 인디아나주에서 생산과 소비를 협동으로 하는 이상촌으로서 "뉴하머니" 건설, 실패했으나 협동조합운동의 원류 실천.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불림.
- 그 후 일거에 이상적인 협동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주변 생활상의 요구부터 협동관계로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짐.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여러 유형이 나타남.
- 아직 농업이 주었던 프랑스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 사상이 먼저 깨끗던 영국과 달리 생산협동조합 사상이 먼저 깨끗음. 중농주의에 심취된 찰스 푸리에의 소농협동경영 조직체로서 단위조합(팔랑쥬)조직체 창설 제안. 농산물 생산에 기초한 푸리에와 달리 뷔세(1796-1865, 프랑스)는 공산품 생산을 기초로 노동과 자본을 결합

하는 노동자생산조합 주도. 프랑스에서는 농촌에서 일찍 농업 '상디카'라는 일종의 협동조합이 자연발생 출현. 이것이 모체가 되어 농민생산조합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발전.

○ 독일에서는 자본제 생산양식의 보급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뒤떨어진 경우로 자본주의 이전 농촌공동체의 상호부조관계에 기초한 협동조합 모색. 농촌에 화폐경제 확산에 따른 고리대금업자 횡행에 대응, 1854년부터 F.W.라이파이젠(1818-1888,독일)이 농촌신용조합 창시. 근대 농민신용조합의 시초. 같은 무렵 독일 도시에서는 술체 텔리취(1808-1883, 독일)가 공업화 물결에 밀려 영업이 어려워진 영세수공업자들을 위한 도시신용조합 결성.

○ 영국에서는 오웬에 이어 윌리엄 킹(1786-1865, 영국)의 소박한 소시민적 협동조합 사상 출현. 오웬의 영향을 받았으나 현실 여건 중시, 소비자 조합에 착안. 노동자를 값싼 소비자가격으로 협동 단결시키고(조합원에게 물품 싸게 구입, 공급) 자본 형성을 통해 중간상인 이윤을 배제하여 노동자 빈곤과 사회악 제거 가능하다고 생각. 그의 "협동조합인(The Cooperator)" 월간지(28회 발간)는 훗날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 창설자들을 의식화해냄.

○ 영국, 프랑스, 독일에는 각각 소비조합, 생산조합, 신용조합의 세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탄생, 그 후 세계로 확산

### (3)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

○ 협동조합의 발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운영규칙을 갖춘 협동조합은 1844년 영국 랭카셔 공업지대의 로치데일에서 만들어진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 공정개척자조합/로치데일조합)으로, 노동자 소비조합 형태. 즉, 소비 물자를 공동 구입하여 서로 나누는 오늘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원형에 해당. 로치데일조합은 생협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전체의 선조로 일컬어짐.

○ 1810년대부터 영국 각지에서 생겨난 협동조합들은 이상에 비해 실제 운영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 이에 협동조합 재건에 착수한 노동자들은 실패에서 배우고 조직건설 방법과 규칙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립을 준비함. 그 후 풀란넬 공장 직공들을 비롯한 28명의 조합가입자가 1인당 1파운드의 출자금 내어 설립. 오늘 근대 협동조합의 원조가 시작됨.

### (4) 협동조합의 발전

○ 1895년, 런던에서 제1차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 ICA 2012년 현재 96개국 265개 회원기관, 조합원수 10억명, 세계최대 NGO, 매년 7월 첫째 토요일 '국제협동조합의 날' 지정

○ 1844년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이 20세기 초반에는 유럽과 북미에서,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나머지 세계의 나라에서 전국적 조직체를 형성할 정도로 발전. 그런데 기존의

협동조합이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및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달 등에 직면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 적지 않은 대규모협동조합들이 파산하거나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였고, 살아남은 협동조합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하고 주식회사 방식의 자본 조달구조 및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세대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 이탈리아의 볼로냐 지역의 협동조합복합체,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복합체 등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형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UN은 인류공통의 과제인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 인정. "협동조합은 인간적인 요소를 지니므로 생산적인 노동을 만들 어내며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1994, 갈리 사무총장)
- UN은 "협동조합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지침"(1998.12.23)에서, "정부는 협동조합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내용을 국가가 지정하는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 특히,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함.
- EU : 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약 2천만세대, 유럽 전체 소매매출의 약 10% 차지. 유럽 전체농산물의 60%가 농협을 통해 수집/가공/판매. 금융에서 협동조합금융기관이 유럽 전체예수금의 17% 차지. 공제조합의 경우 약 4천만세대 가입
- 이탈리아 : 14만개 협동조합 설립. 1970년대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급속 증가. 사회 재활/의료서비스/약자 지원/장애인 지원 등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확대
- 프랑스 : 협동조합/공제조합/비영리단체들을 "사회적 경제조직(Social Economy)"으로 처음 지칭, 제3섹터로 간주. 이후 이 개념이 유럽 전역에 확산.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발달, 협동조합이 대표적임. 농업신용금고는 프랑스 제1의 은행. 유제품 및 와인 주조에서 농협 시장점유율이 각각 41.6%, 64.5% 차지.
- 스페인 :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
- 미국 : 협동조합의 국민경제 비중이 상당히 큼. 일반기업에도 협동조합의 원리가 반영, 최근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발전. 미국 협동조합연합회(NCBA)는 회원 조합 47,000개, 조합원수 1억6천만명

## (5)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

- 전통적 협동조직 : 두레/ 계/ 향약
- 협동조합의 역사는 일제시대부터 시작. 일제하 금융조합(1907~), 산업 조합(1926-) 등은 관제조합으로서 식민통치 지배도구이자 항일농민조합 운동과 자주적 민간협동조합운동의 봉쇄/개량/회유책으로 기능
- 일제하 민간협동조합운동의 역사
  - 경성소비조합(1920)과 목포소비조합, 조선노동공제회 소비조합(1921) 등의 여명기
    - 협동조합운동사(1926.7. 동경유학생 중심) : 함창협동조합(1927.2) 설립. 1928 본부 경성 이전. 실무중앙연합체로서 협동조합경리조합(1928.4) 결성 후 본격 조직 활동으로 충남, 경남, 경북에 22개 조합 설립(조합원수 약 5천여명). 1932년말 80 개 조합 2만명 조합원 확보. 일제 탄압으로 1933년 강제 해산
    - 천도교 조선농민사(1925) : 협동조합운동 전개. 알선부(1926)를 두어 함남, 평북 중심으로 생활물자 구매 알선 및 생산물 판매 알선 활동 전개. 조선농민공생조합(1931), 조선농민공생조합중앙회(1933) 결성으로 소비조합, 생산자조합, 이용조합, 신용조합 활동. 최전성기 15만명 조합원
    - 기독교(YMCA)계통 협동조합운동 : 1926년 전후 경성중앙YMCA 경성 부근 8 개 농촌협동조합 조직. 그 후 부락단위 협동조합 결성에 주력. 전성기에는 전국 조합수 720개. 1937년 강제 해산
  - 1933년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과 지도자 투옥, 관제 농촌진흥운동 및 산업조합 발흥으로 거의 소멸
- 일제하 관제조합(금융조합, 산업조합, 식산계, 농회,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은 해방 후 농협, 수협의 물적 기반으로 옮겨감.
- 해방후~1987년까지는 정부에 의한 조직, 통제, 지배, 정책수행기구화로 제도권 조합 절대 우위. 해방직후 및 50년대에 일부 자주적 협동조합운동 있었음.
- 60년대 이후 신협운동이 유일하게 민간 자주적 협동조합운동으로 발전, 서민금융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 후 사실상 금융기관으로 고착
- 70년대 중반부터 강원도 지역 중심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위시한 다양한 협동조합운동 태동, 그 후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로 이어져 오늘의 생협운동의 거름이 되었음.
- 70년대 후반부터 농민운동 진영에서 농협민주화운동을 전개, 1987년 6월항쟁 이후 직선제 쟁취, 자주적 민주농협 혁명운동(신.경분리)
- 90년대 초반부터 대안적 삶의 실천과 공동구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빈민지역주민운동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과 도산기업의 노동자자주관리운동, 공동육아협동조합운동, 의료보건협동조합운동, 제3섹터형 자활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직운동 전개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1.12), 기본법 시행(2012.12.1)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동연 교육부장



CCI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2012. 07.

교육부장 김동연



교육 순서

1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2 사업체의 메카니즘

3 가지 사업조직

4 사례를 통한 운영원리 비교하기

## 제 1 장.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왜 협동조합 운영원리가 중요한가?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 여러분의 선택은?



- \* 매출 1조6,680억원
- \* 영업이익 247억원
- \* 시장점유율 8%
- \* 업계 4위

## 2005년 한국 까르푸 실적



2007년 까르푸는 왜 한국을 철수했을까?

## 까르푸 철수의 비밀



≠



투자자들의 영리적 불만족

투자자 = 고객 ?



=



만약 고객과 투자자가 동일했다면?

## 사업체: 상품 & 서비스



## 제 2 장.

사업체의 메카니즘

## 주요 이해관계자

원료공급자



노동제공자



자본투자자



구매  
고객



## 주식회사

자본투자자



원료공급자



노동제공자



구매고객

국내 업계 1위, 2011년도 배당액은?



## 협동조합



자본투자자



원료공급자



노동제공자



구매고객

## 협동조합



## 비영리기업



## 사업 메카니즘



### 제 3 장.

3가지 사업조직

## 협동조합은 떡 자르기



협동조합은 떡 자르기

# 3가지 사업조직

## 사업조직의 3가지 형태

영리조직



VS

회원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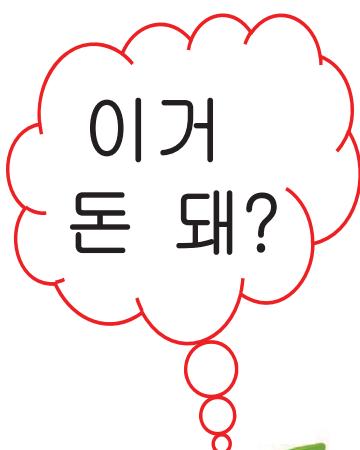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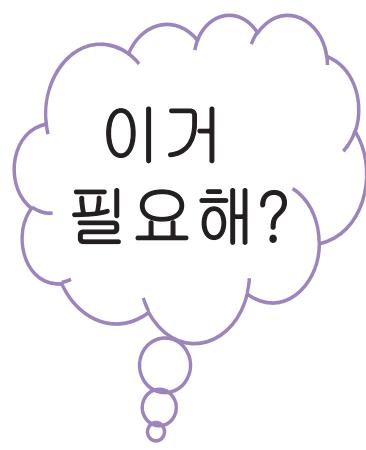
협동조직

## 기본질문

이거  
돈 돼?



이거  
필요해?



이거  
의미있어?



## 조직의 목적

이 윤

자 립

봉 사



## 사업의 성격

수익형

원가형

지출형



## 조직의 가입

폐쇄형

개방형

개방형



## 자본의 동원

가입시  
필수출자

가입후  
의무출자

자발적  
경비납부



## 의사의 결정

1주1표

1인1표

1인1표



## 잉여(이윤)의 배당

투자배당

기여배당

무배당



## 주식회사 vs 협동조합 vs 비영리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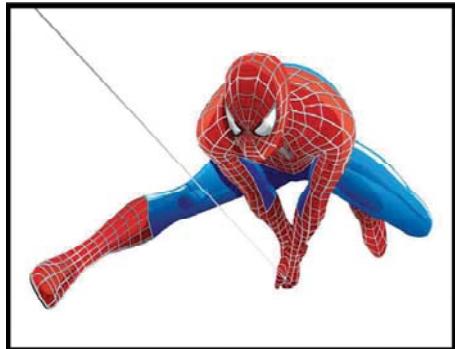
주식회사	협동조합	NPO
목적	이윤	자립
성격	수익형사업	원가형사업
가입	폐쇄형	개방형
자본	필수출자	의무출자
의결	1주1표	1인1표
배당	투자배당	기여배당
규율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 제 4 장.

사례를 통한 운영원리 비교하기

## 주식회사 vs 협동조합 vs 비영리사단 : 사례 1

<상황1> 수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이 각자 지구를 지키다가 너무 힘들어서 서로 힘을 합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법인 등록을 하려면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과연 이들은 어떤 조직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 주식회사 vs 협동조합 vs 비영리사단 : 사례 2

<상황2> 물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바닷물로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소위 ‘해수농업’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려 하는데,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중 어느 법인격이 가장 적합할까?



## 주식회사 vs 협동조합 vs 비영리사단 : 사례 3

<상황3>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취업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창업 컨설팅 사업을 해 보자고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중 어떤 조직형태를 택했을까?



여러분의 선택은?



영리조직

회원조직



협동조직

**감사합니다.**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범용 팀장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관련성 검토1)

## 1. 선행연구 검토

-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연구와 문헌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종류가 작성되었으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여기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및 사회적 기업의 유형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만 검토함.

### 1)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관계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의 하위부문으로 보고 있는 연구자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음.
- 장원봉은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많은 지역 조직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합법적 기업형태인 협동조합 형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이라 칭하였던 것이다. 1991년 법제화 이후 공식 명칭이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으로 개정된 이들 조직들은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취해온, 조합 구성원들의 이해에 기초 한 조직의 목적 및 구조를 지역 사회의 전체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하였다”<sup>2)</sup>고 지적하며, 기존 협동조합의 한계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대체, 보완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음.
- 나카가와 유이치로는 이와는 달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경제적 쇠퇴에 의한 사회적 피폐가 심해지면서 장애자, 고령자, 여성 그리고 실업자 등이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쇠퇴하고, 피폐하여 가는 사회나 커뮤니티를 재생시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정부는 오히려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복지나 교육 등의 공동

1) 본 글은 장종익외, “한국 협동조합 섹터의 발전방향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가능성”, 함께일하는재단, 2011 중 제2장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2) 장원봉,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녹색평론], 5~6월 통권 100권, 2008

부문으로부터 발을 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를 스스로의 힘으로 재생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이들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재생이나 활성화의 과정에서 지방의 커뮤니티에서 생활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sup>3)</sup>라며 사회적협동조합을 기준 협동조합과 다른 여건에서 형성된 연속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

- 윤형근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이라 부르는 이유는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법적인 의미의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은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조직, 자발적 결사체, 또는 민간 영리기업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 공동소유기업, 종업원 주식소유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크레디트유니온, 소비자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LETS(Local Exchange Trade System)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동일시하고 여기에 전통적 협동조합 등이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포함시키는 “목적” 중심의 구분을 하고 있음.
- 현정훈은 Charlie Cartell의 논의를 빌려 광의의 의미로 사회적기업은 “일종의 기업으로서 상업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일종의 기업으로서 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이윤은 창출해야 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은 …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이라고 언급했음. 하지만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인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서는 사회적기업을 파악하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보다 큰 개념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한 가지 형태이다”라고 정리함.<sup>4)</sup>
- 장종익은 기업소유형태에 대한 신제도경제학의 논의를 정리하며 사회적기업의 조직혁신형태로 유럽의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sup>5)</sup> 하지만 미국 및 다른 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동시에 비교하고 있지는 않음

3) 나카가와 유이치로,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조류”, 한국협동조합연구 20집, 1호 2002

4) 현정훈,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특성비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연구보고서, 2006

5) 장종익, “사회적 기업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신제도경제학적 고찰”, 농정연구 2011 봄, 2011

- 기존의 선행연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의 하위부문으로 설정하는 개념적 연구에서 머물고 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상호관련성을 정리하고 양자의 협력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는 제한적임.
- 특별하게 엄형식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sup>6)</sup>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EMES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작업을 진행하였음. 이 책에서는 전통적 사회적 경제로서 전통적 협동조합과 민간단체를 소개하고, 새로운 사회적경제로서 새로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음. 엄형식의 연구는 본 연구를 통해 더욱 심화시키려고 함.

## 2) 사회적기업의 유형 분류

- 사회적기업의 유형분류와 관련된 논의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대부분 유럽형과 미국형 등 국가별 차이점을 비교한 경우가 많고, 활동측면의 분류도 국가별 차이에서 유추한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음.
- 정선희는 사회적기업을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일자리제공, 직업훈련 등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목적 비즈니스 기업, 2)비영리기관의 운영비와 프로그램 조달을 위한 수익원으로 설립하거나 비영리기관과는 관련이 없으나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환원하기 위해 설립한 수익창출 비즈니스 기업, 3)영리와 비영리 간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sup>7)</sup>
- Janelle A. Kerlin은 『사회적기업: 국제비교』에서 각 나라의 사회적기업의 대표적 유형을 소개하고 있음.<sup>8)</sup> 이는 각국의 법제도와 맥락을 서술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유형의 통합적 설명이 적용 가능한지를 바라보는 데 함의를 주고 있음.
- 남승연은 유럽형 사회적기업이 주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방식으로 성장하고, 미국은 비영리기관, 재단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제약이나 지역연계의 부담없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며 유럽형과 미국형의 차이를 큰 틀로 구분한 뒤, 접근법에 따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6)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함께일하는재단, 서울, 2008

7) 정선희, **사회적 기업**, 다우출판사, 2004

8) Janelle A. Kerlin etc, Social Enterprise : A Global Comparision, Tufts University, 한국어로 조영복, 사회적기업:국제비교, (주)시그마프레스, 2010으로 번역출간

기본적 전제 속에서 기존의 유형 방식을 비판적으로 음미한 뒤, 목적, 구조 및 운영양식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함. Alter의 유형 분류에 대한 작업을 기초로 한국의 현실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음.<sup>9)</sup> 남승연의 연구는 본 연구에 상당한 함의를 제공하였음.

- 다양한 유형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국가별 사회적기업의 맥락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거나, 유럽과 미국 사회적기업의 차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 사회적기업 논의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가의 거버넌스 구조가 구미와 다른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하며, 특히 유형의 분류가 단순한 학문적 관심사가 아닌 현장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 혹은 확산의 대상 주체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정책의 결정과정에 유의미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2. 논의전개를 위한 이론적 검토

### 1) 사회적경제 이론

#### 가. 사회적경제의 정의

-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 혹은 공공의 목표를 지향하는 협동조합과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이 때 기준의 협동조합은 이해당사자들의 목표를 지향하는 반면, 새롭게 제도화 되는 사회적경제는 공공의 목표를 주로 지향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그리고 생산 활동(교육, 서비스 등)을 주로 하는 민간단체의 총체”로 사회적경제의 구성인자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데로쉬가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정의한 기제도화 구성인자와 제도화 중인 구성인자로 구분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정의한 것임.
- 유럽위원회는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드 푸르니에는 목적과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였는데,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9) 남승연, 조창현, 정무현. “사회적 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사회적 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이해를 위하여”, 『창조와 혁신』 제3권 제2호, 2010

노동의 중시라는 4가지 원칙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 법적지위에 따른 조직유형의 정의보다는 사회적경제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방점을 찍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드 푸르니에의 목표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데로쉬의 확장된 주체를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모두 사회적경제의 하위 부문으로 이해함.

표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요 정의

규정 주체	정의	
프랑스 사회적경제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그리고 생산활동(교육, 서비스 등)을 주로하는 민간단체'의 총체	
드 푸르니에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4가지 원칙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	
유럽위원회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	
데로쉬 (법적지위 중심)	기 제도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제도화 중	지자체 기업, 지역공동체기업, 노동자소유기업, 참여적 성격의 기업

#### 나. 사회적경제 이론 모델

- 자연과학적 개념과는 달리 모든 인문사회학적 개념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정의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념의 효과도 설명될 수 없음. 인문사회학적 개념들은 개념을 둘러싼 사회 전체의 움직임과 구조, 다른 개념 및 현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향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도 자본주의 및 국가 운영을 둘러싼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변천되어 왔음. 역사적 흐름을 염두에 둘 때만이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단계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해 설명하려 함.

#### □ 페스토프의 다원적 경제모델

- 사회적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는 다원적 경

제모델의 하나로 제시한 페스토프의 다원적 경제모델을 활용하였음.

- 페스토프는 스웨덴의 복지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 속에서 기존의 복지체제에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참여가 강화되는 참여민주주의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담당하던 복지를 단순하게 민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3섹터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며 모델을 제시하였음.<sup>10)</sup>
- 페스토프의 다원적 경제모델은 첫째, 서구와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으며, 둘째, 근대적 시민사화라고 할 수 없지만 규모를 가진 비공식부문을 설명할 수 있으며, 셋째, 서구와 다른 한국의 특수한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을 설명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친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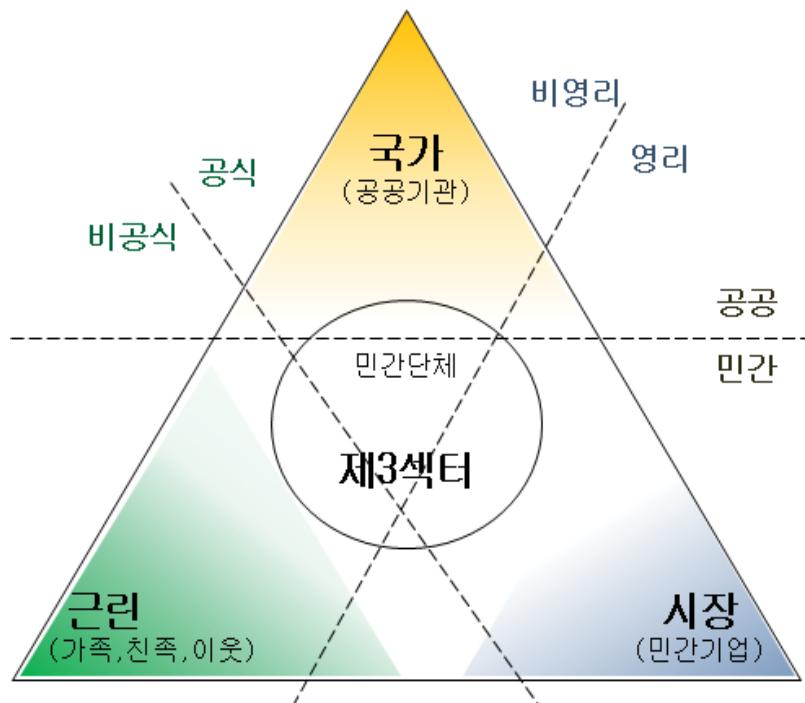


그림 1. 다원적 경제모델의 개념도

- 다원적 경제모델은 삼각형 각각의 꼭짓점이 국가, 시장, 근린의 영역을 담당하지만, 이 영역들은 자체적으로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각각이 가지는 원리, 제도, 조직들로 구성된 일종의 생태계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하나의 경제 속에서 3가지 영역은 제도적 변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상호간의 영향력이 달라지며, 중첩되고, 새로운 사업조직들의 만들어 질

10) 엄형식, 앞의 글, P81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2) 거버넌스 이론

- 사회적기업이 각국별로 주요 형태가 다른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경제의 논의 구조에 행정학에서 발전되어온 거버넌스 논의를 결합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임.<sup>11)</sup>
- 거버넌스는 기존의 “Government(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Government를 포괄하면서 확장시킨 개념임.
-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개념으로 도입된 것은 서유럽 행정국가(사회민주주의의 이름에 충실한 관료제적 복지국가)가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모색하는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sup>12)</sup>
- 세계은행은 “국정 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 또는 “발전을 위해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권력 행사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음.
- 거버넌스 논의가 확대되는 속에서 국가별 거버넌스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표와 같이 국가별 연구를 통해 거버넌스 유형이 제시됨.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의 유형분류에서 유럽형과 미국형의 차이가 논의되는데, 이를 거버넌스 이론 관점에서 보면 거버넌스 유형의 차이에 의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발생과 운영, 제도적 구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예를 들면 유럽은 주로 국가가 주도하거나 기본적 책임을 지되, 자기규제적 협동장치를 통해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네덜란드 거버넌스의 틀 속에서 사회적경제도 국가의 복지기능, 지역사회개발정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유럽의 사회적기업들도 이런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11) 이 부분의 내용은 지역농업네트워크, 『농정분야 거버넌스 구현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07 연구용역보고서의 거버넌스 이론검토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항만 요약정리 및 보충한 것임

12) 거버넌스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서유럽의 행정국가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발전국 가 전체를 포괄하는 관료제적 국가 전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서구 학자들의 시각이라 할 수 있으며, 절차상 민주적인 정당성과 합리적 목표를 지향하는 유럽의 국가(혹은 최소한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들과 절차상의 정당성과 합리적 목표가 결여된 한국의 1987년 체제 이전의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함.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양자의 차별성이 없는 반면에, 보다 확대된 거버넌스 논의의 한 축인 시민사회의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비민주적이었던 국가와 서유럽의 국가 간의 차이는 매우 큰 것임.

발전되었음.

표 2. 주요 국가별 거버넌스 유형과 사례 국가

거버넌스 유형	주요 행위자	특징	사례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국가조직 및 사회정상 조직들	주도적 위치, 타협적, 포획적	스칸디나비아, 일본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	NGO와 같은 시민단체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	미국
국가주의 거버넌스	국가	국가독점, 강압, 직접적, 기술관료적 방식	45년전 스페인 87년 이전 한국
네덜란드 거버넌스	사회적 연결망	국가가 기본적 책임, 자기규제적, 협동적 장치로 원활히 수행	소규모 유럽국가

- 반면 미국은 국가의 기능보다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국가의 제도와 예산, 정책에 기반을 두기보다 다양한 재단, NPO와 연계되거나, 볼런티어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운영형태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각국의 거버넌스 제도와 사회적기업의 법제도를 비교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풍부히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 기업조직형태론

- 협동조합의 이론과 사상은 19세기초반부터 협동조합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음. 신기엽의 연구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화 방식의 유형으로는 1)역사적 개념, 2)이데올로기적 개념, 3)법률적 개념, 4)실증적 개념이 있음.<sup>13)</sup>
- 신기엽은 협동조합의 역사적 개념은 협동조합 목표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기 어렵고, 이데올로기적 개념은 국제적으로 확산된 협동조합 개념이지만, 추상적 내용으로서 실증적 분석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률적 개념도 국민국가 법률 체계 내부에서 협동조합의 법인격과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목표이므로, 구체적인 협동조합의 사업을 평가,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13) 신기엽 외, “회원경제 지도·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농협경제연구소, 2011, P5

하여, 실증적 개념은 “전통 이론과 사상의 추상적 목표 진술방식을 정교화 하여 협동조합의 활동과 성과를 인과적이며 반증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조직 특성과 운영 목표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해왔다”고 주장하며 실증적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이론적 연구의 초기라는 제약조건 속에서 각 국가의 발생사와 법제도적 비교라는 서술적 분석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이념형을 추구하는 당위성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음.
- 사회적기업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다른 형태의 사업조직과의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가능한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심도 깊게 접근하지는 않지만, 기업조직형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신제도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유형비교에만 활용하려함.
- 기업조직형태론으로 관련 논문을 작성한 장종익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기업조직 형태론적 접근을 하는 것은 “당위적 차원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유용성 논의를 넘어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발전의 조건과 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효과적인 실천방안의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인간의 불완전성하에서 생산 및 거래의 조직화 원리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촉진하는데 기여”<sup>14)</sup>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기업조직형태론이란 기업이 자신의 조직형태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대해 통합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이 제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시장의 계약비용(contracting costs)과 소유비용(ownership costs)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기업형태를 선택하게 됨.
- 기업의 생산 활동은 자본, 노동, 원료의 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조달된 투입요소에 기술과 경영이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자본, 노동, 원료, 상품의 시장구조와 거래의 특성 등에서 발생하는 ‘시장을 통한 계약비용’이 가장 높은 측에서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유인이 높아지게 됨.<sup>15)</sup>

14) 장종익, “사회적 기업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신제도경제학적 고찰”, 농정연구 2011 봄. 2011

15) 장종익,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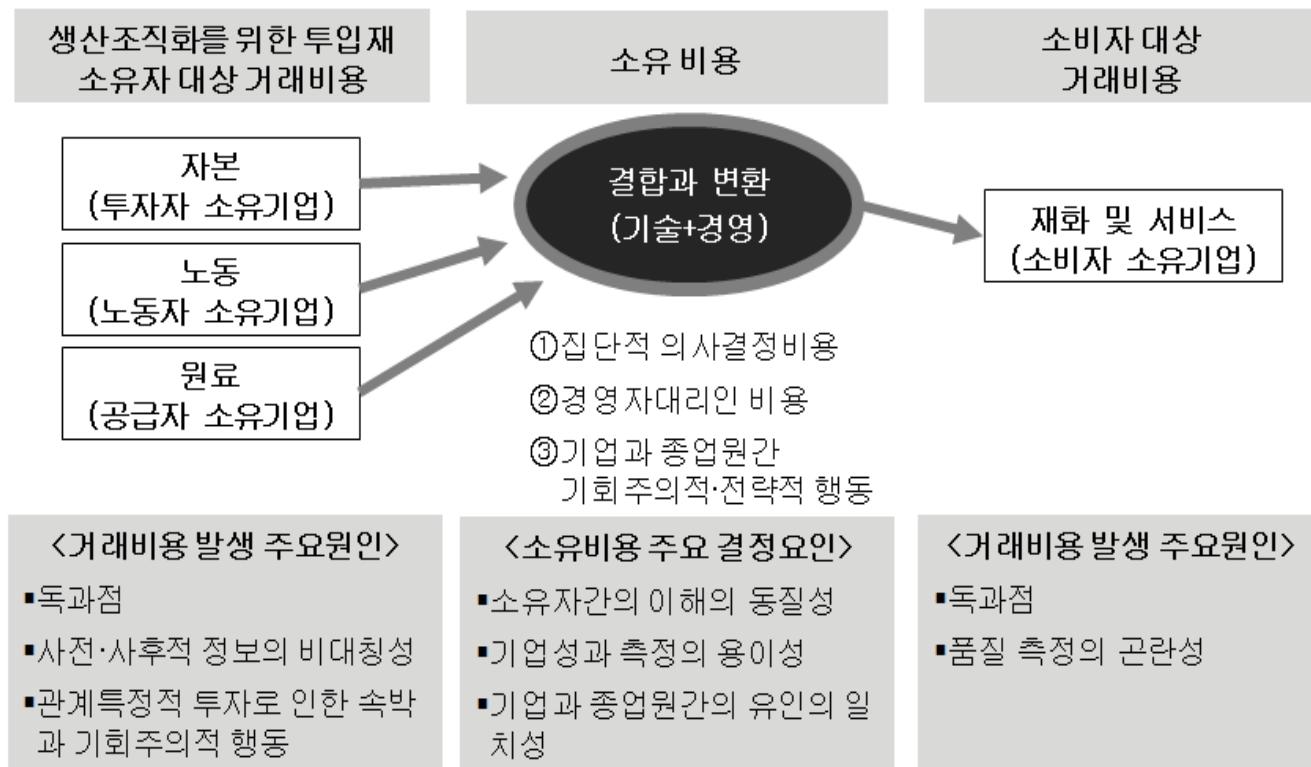


그림 2. 기업소유형태 결정요인

- 즉,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본조달과 관련된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자본의 직접 제공자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소위 투자자 소유 기업이 되고, 노동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비용이 높을 경우 노동의 제공자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노동자 소유 기업이 되며, 원료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비용이 높을 경우 원료의 공급자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원료공급자 소유 기업이 되며, 생산된 제품의 소비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비용이 높을 경우 소비자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소비자 소유 기업이 되는 것이 합리적임.<sup>16)</sup>
-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 협동조합과 NPO기업, 사회적기업의 거래 비용과 소유비용의 특징을 검토하여, 상호간의 비교를 하려 함.

16) 장종익, 앞의 글

### 3. 사회적경제 논의의 역사적 흐름<sup>17)</sup>

#### 1) 19세기의 사회적경제

##### 가. 사회적경제의 여건

- 다원적 경제모델에 따라 19세기의 경제상황을 설명하면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시장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된 영역에 존재하며, 국가는 시장에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이 주류를 점하던 시기였음. 따라서 국가는 속칭 “야경국가”로서 경제활동에 대해 정치적이며 제도적 개입만을 주로 하고,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화하고 있었음.
- 19세기 시장은 자본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본총량의 한계로 생활 전반에 전체에 대한 시장개입은 제약되어 있었음.
- 국내에서 자본이 어느정도 축적되어도 식민지 개척을 통해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이윤율이 낮은 균린생활 영역으로는 자본이 침투할 동인을 제공하지 못했음.
- 시장과 국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이 한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균린 경제영역의 범위는 넓은 분야에서 이뤄졌음.
- 당시 도시에서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에서 벗어나 원자화된 개인으로 모든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에 대처해야 했다. 가장 먼저 노동자들이 직면할지 모르는 질병, 사고, 사망,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sup>18)</sup>하기 위한 결사체를 요구하게 되었음.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은 이런 구조 속에서 발생하게 되었음.
-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대부분은 물적 재화 형태의 상품이었음. 농업생

17)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려면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동시에 제시되어야 하지만,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영역이 아니므로 세밀한 각주는 달지 않고,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연계관계를 밝히는 수준에서 사회적경제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였음. 보다 구체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할 것.

장원봉,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녹색평론], 5~6월 통권 100권, 2008

윤형근, 사회적 협동경제와 대안적 기업의 모색 환경과생명 통권46호, 2005

George R. Melnyk, “공동체의 탐색- 사회적협동조합”, 최경식 번역, 농협경제제31집 2003.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함께일하는재단, 서울, 2008 등

18) 장원봉, 앞의 책

산품이나 소생산자들이 시장에 내온 상품도 재화였음. 따라서 당시의 협동조합도 신용협동조합, 공제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재화의 시장거래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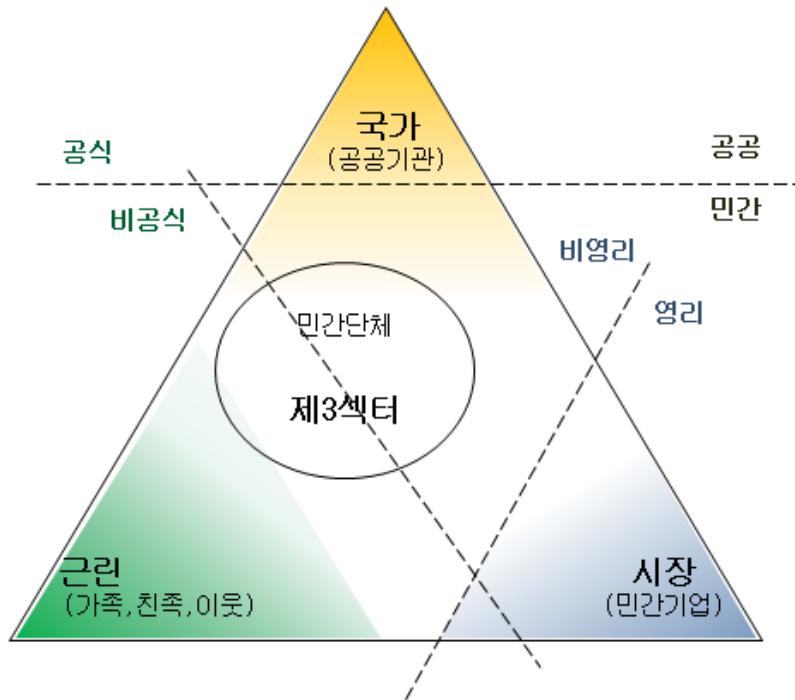


그림 3. 19세기 다원적 경제모델의 구조

#### 나. 사회적경제의 논의 상황

- 19세기 사회적경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이론가는 윌라스임. 그는 경제학을 순수경제학, 사회적 경제학, 실용경제학의 3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는데, 이 때 사회적 경제학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으로서 분배의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으로 설정하였음.
- 샤르 지드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사회적경제 전시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회적경제를 부의 분배 및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1)고용주의 사회적 공헌, 2)결사체(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노동조합 등), 3)공공규제(사회적 입법) 등 노동조건과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을 제시하였음.
- 유토피안 사회주의나 님므학파 등 다양한 사상들은 시장이 아닌 협동조합 유형의 별도의 결사체를 통해 자본주의의 단계를 뛰어넘거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다양한 실험을 수행했음. 아르네스크 포아슨의 협동조합공화국 이론도 이런 영향 속에서 협동조합적 사업조직을 전면화하는 국가의 탄생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도 했음.

- 하지만 이런 논의는 위의 3가지 영역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상호관계가 해체되면서 사용되지 않게 되었음.

## 2) 20세기 초중반의 사회적경제

### 가. 사회적경제의 여건

- 20세기에 접어들어 자본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생산성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었음.
- 20세기 초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확보경쟁이 격화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러시아가 사회주의국가를 설립하여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게 됨으로써 체제경쟁이 시작되었음.
- 동시에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 국가의 재정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이 과정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이 국가권력에 개입하면서 노동자 및 서민들의 생활상의 복지를 국가가 해결하는 복지국가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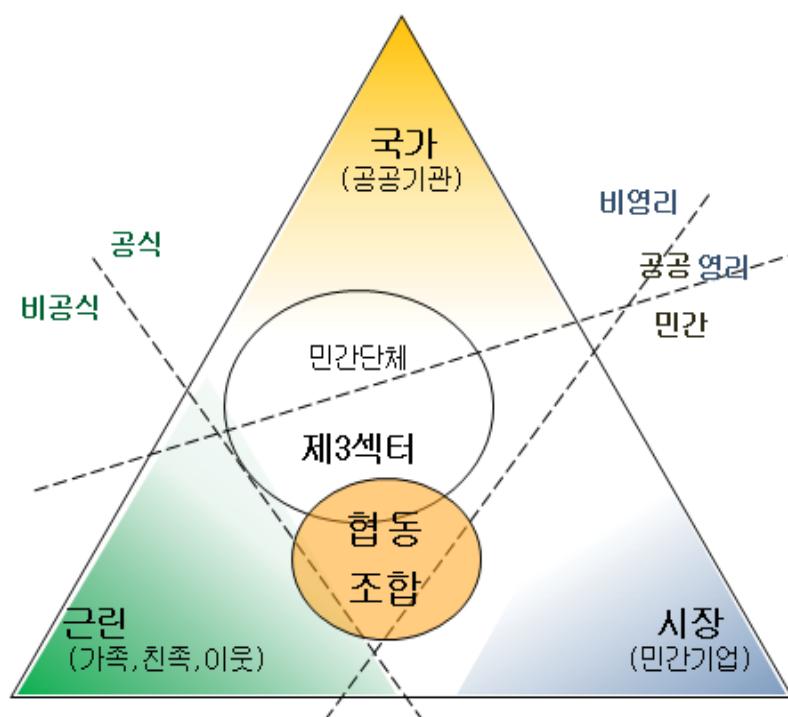


그림 4. 20세기 초중반 다원적 경제모델의 구조

- 복지국가체제는 세수 증대를 기반으로 국가재정을 확대하고, 확대된 국가재정으로 경제적 측면에 개입하면서 균린영역을 국가가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음. 다음 그림의 공공/민간 선의 기울기가 좌하향하여 균린을 상당히 포함한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음.
- 균린 경제 영역은 복지국가체제 하에 국가의 경제부문 확대와 시장 경제의 확대,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경제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축소되었음.
- 국가의 경제개입은 복지서비스를 상품화하여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주는 재화이기는 했지만, 19세기에 비해 금융의 확대, 생산성 증대에 따른 전문직의 증가로 인해 서비스, 용역 부문도 꾸준히 확대되었음.

#### 나. 사회적경제의 현황

- 복지국가모델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경제에 속한 구성요소들의 결속력은 더욱 약화되었음.
- 선진국에 한해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운동과 외부의 호조건이 결합되면서 가족의 재생산에 필요한 임금수준으로 노동보수를 상승시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량소비가 가능한 경제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산력이 증가와 맞물려 컨베이어 시스템을 상징으로 하는 포디즘이 시작되었음. 포디즘의 특징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속에서 노동자 계층은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발전목표를 현실적으로 상실하게 됨.
- 상호공제조합은 국가복지가 강화되고, 정부에 의해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공적부조정책이 수행되면서, 국가복지시스템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되는 경우가 발생했음.
- 협동조합은 자본축적을 통해 일반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생산성을 높이자, 대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규모화 되면서, 조합원 및 균린영역과의 관계가 약화되게 됨. 협동조합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시장경쟁의 격화가 발생하면서 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association)의 규정성보다 사업조직(enterprise)의 규정성이 강화되면서 영리적 기업과의 차별성이 약화됨. 이런 양상이 지속되면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키거나 자본주의를 초월하려는 지향을 가진 성격보다 자본주의 내의 하나의 섹터로서 인식되고 시장의 한 영역으로 포섭되어 갔음.
- 또한 후발 자본주의국가들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초기 균린 영역에서의 영향력

에 주목하여 기능적 특성만을 도입, 국가가 주도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나갔음. 특히 농어촌사회에서 1차생산자협동조합을 주도하였음.

#### 다. 사회적경제의 논의 상황

- 사회적경제의 현상 자체가 각자 분리되고 거시전망을 상실하면서 주변화되어버리는 조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논의도 위축되어 버렸음.
- 이런 상황에서도 수세적이지만 협동조합의 공통성에 주목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포케는 국제노동기구에서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협동조합들은 각각의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 단일한 협동조합부문으로 뭉칠 것은 제안하며, 협동조합의 기준으로서 1)재정적 이익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이어야 하고, 2)구성원들은 출자자이면서 이용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3)1인1표이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에 대한 협동조합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3가지를 제시했음.
- 포케의 협동조합부문론은 이후 협동조합원칙과 관련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협동조합을 하나의 원리를 가진 사업조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고, 법적으로는 프랑스의 협동조합일반법 제정의 논리적 토대가 되었음.

### 3) 20세기 후반의 사회적경제

#### 가. 사회적경제의 여건

- 1970년대 석유가격폭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과 복지국가모델에서 나타나기 쉬운 국가조직의 관료주의화, 복지비용의 점증 등으로 인해 복지국가모델은 “복지병”으로 불리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음. 이런 경향은 산업경제보다 미국의 산업에 의존하며 금융부문이 발전된 영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 대처가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 논의가 국가정책에 채택되었음. 이후 1980년 레이건의 집권으로 미국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감세, 국가기능의 축소, 시장의 자율성 강화”라는 신자유주의가 확대됨.
-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1980년대 후반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체제경쟁의 압박이 줄어든 것에 힘입어 이후 20여 년간 급격히 확대되었음. 그 결과 복지부문에 대한 국가개입 방식이 변화되고, 사회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가 강화되었으며, 국가 간 및 국내의 지역 간 불균등이 심화되었음.

- 지속적인 자본량의 확대와 생산성의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의 유동성이 극대화되고, 산업부문도 대규모 장치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초국적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게 됨. 자본량의 확대와 함께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개척이 불가능해지고, 남북문제 등으로 더 이상 지리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어렵게 되자 그동안 시장의 영역이 아닌 다양한 부문을 시장질서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진행됨. 그 결과 언론, 미디어, 문화 등 다양한 비시장적 영역이 시장구조로 편입되는 등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근린 영역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예산의 집행방식의 변경과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문제의 발생과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쇠퇴지역의 문제, 도시 내부의 소규모 지역 간 격차의 발생 등에 따라 새롭게 생성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이에 따라 근린영역이 재조명되었음.
-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더욱 다양화되어 재화는 물론, 용역, 정부서비스의 상품화 등 상품계열이 확장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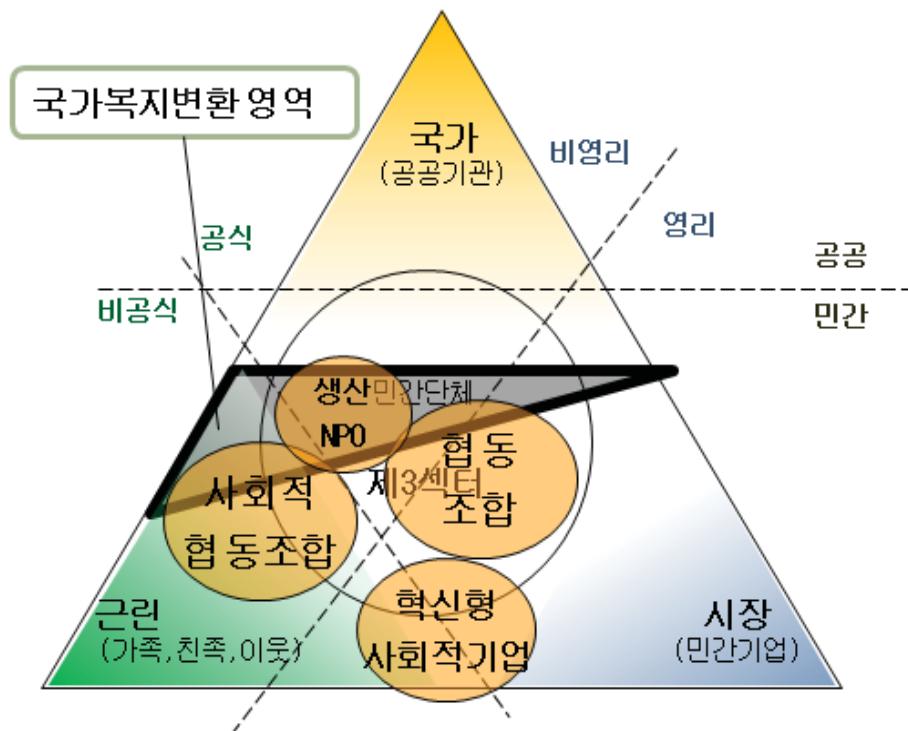


그림 5. 20세기 후반 다원적 경제모델의 구조

#### 나. 사회적경제의 현황

- 신자유주의의 확산 초기에는 사회적경제, 특히 사회적경제 중 여전히 현실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확대되었지만, 신자유주의

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협동조합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음.

- 특히 EU에서 농촌지역에 대해 1945년 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었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CAP)이 WTO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점차 약화되면서 EU의 농업정책이 농산업지원에서 농촌지원으로 전환하면서 낙후지역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지만, 시장이나 영리기업이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없는 구조에서 지역사회의 유지를 둘러싼 새로운 유형의 사업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또한 협동조합의 성과에 대한 의심으로 협동조합적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De-Mutualization) 영리기업으로 전환한 협동조합들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는 실증적 사실이 드러남. 예를 들어 1970년대의 기업화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한 영국의 Bradford & Bingley, Northern Rock 등이 파산함에 따라, 주식회사가 협동조합보다 무조건 우월한 사업조직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음.
- 여기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의해 경제가 위축되면서 영리 주식회사가 위기에 봉착한 것에 대비할 때 협동조합의 위기대응능력과 회복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뤄졌음.<sup>19)</sup>
- 또한 1980년대 정부의 예산축소에 따라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집단화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 등이 강조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논의가 다시 활성화됨.

#### 다. 주요 논의

- 기존의 기업이론이나 일반경제학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나타나고 협동조합에 대한 재발견이 이뤄지며, 정부도 직접복지사업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복지률 연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적 정리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음.
- 사회적경제의 정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정체성을 부여할 개념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양리 데로쉬는 1977년 컨퍼런스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업”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제안하였음.

---

19) Birchall J and Ketilson L H(2009)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in Times of Crisis. ILO

- 이후 드푸르니에 의해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정의되었음.
- 1980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은 변화하는 여건에서 협동조합의 원칙을 재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모스크바 총회를 시작으로 전개하는데 여기에서 레이들로는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란 보고서를 제출하며 협동조합의 가치를 재강조하였음.
- 레이들로는 “협동조합이 다른 형태의 기업과 똑같은 사업상의 기술과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지지와 충성을 획득하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만약 세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는 때때로 당혹스러운 방향으로 변화할 때 협동조합이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여 다른 종류의 경제적·사회적 질서를 새로 창조해 가면 안 되는 것인가?”<sup>20)</sup>라고 질문하며 그동안 협동조합이 영리기업의 모델을 추종해 온 점을 비판하면서 협동조합의 새로운 가치 추구를 탐색하였음. 이런 노력의 결과 1995년 ICA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새롭게 추가한 협동조합의 새로운 원칙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였음.

---

20)레이들로 A. F.,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1980년 모스크바 ICA총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00



# 원주협동 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김선기 사무국장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김선기 사무국장

#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망

## ■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역사

### 1) 협동조합 운동의 태동

- 1965년 3월 22일 천주교원주교구 설정 지학순 초대교구장 부임
  - \* 억압받는 민중을 위한 교회 주창
- 장일순 선생(교육자, 정치가, 민주화운동가, 사회변혁운동가, 예술가)과의 만남
- 1966년 11월 13일 천주교회 교인 35명이 강원도 최초로 신용협동조합 결성
  - \* 장일순 선생이 초대 이사장, 이후 문막신협, 단구동신협 결성
  - \* 고리채로부터 농민·소상공인 보호, 자본주의 모순 속에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
- 1968년 가톨릭센터 ‘협동조합 강좌’ 개설, 본격적인 신용협동조합 운동 시작

“만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민중은 삶을 원하지 이론을 원하지 않는다. 정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보함으로써 확장하는 게 아니라 확장함으로써 진보하는 것이다.”

- 1969년 진광중학교에 협동교육연구소 설립
  - \* 학교 정규과목, 전국최초로 학교소비조합 설립
- 1972년 남한강 대홍수 : 재해대책사업위원회 결성
  - \* 협동조합 운동을 강원권역으로 확대
    - 식량지원, 농토복구, 농민소득원 개발
    - 자활운동의 조직화 지원
  - (상담원 배치 - 수입환수 - 재투자 - 공동기금 및 협동조합 결성)
- 광산지역 신협운동과 소비자 협동조합 결성 운동
  - \* 70년대 초반 74개의 신용협동조합 결성

\* 협동조합의 유지발전 방안 -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1.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그 목적은 인간화 운동
2. 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을 위한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3. 임원은 사회를 밝게 하려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4. 지도자는 편견이 없고 누구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5. 협동조합 운동가는 자본주 모순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의지 필요
6. 꼭 필요한 용도에 감사히 쓰이는 돈이어야 회수할 수 있다.

## 2) 협동조합 운동의 시련

- 1970년대 후반부터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영향으로 협동조합 쇠퇴  
→ 새마을 사업 자부담, 농업에서 공업중심, 농촌에서 도시중심  
저곡가와 중산정책(농약사용), 석탄에서 석유로 주 에너지원의 변화
- 이농현상 심화 : 협동조합의 기반 붕괴

## 3)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운동 요구

- 도시와 농촌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가는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 방식 도입

“시장 기능에 농산물 가격 결정을 맡기면 농민은 항상 불리 할 수밖에 없다” →  
도시와 농촌 간 직거래(일본 생활클럽 생협의 공동구매 방식, 몬드라곤협동조합  
공동체의 노동자 협동조합 - 노동자들에 의한 기업소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자율경영) \*호혜적 생산과 노동, 호혜적 거래

- 1985년 6월 24일 농산물 도농직거래조직 ‘원주소비자협동조합’ 창립총회  
\*한살림의 전신

“하늘과 땅과 물과 밥상을 되살려 모든 생명이 한집 살림하듯”  
“밥상에서부터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어보자는 생명운동”

\*협동조합 운동이 계승 발전되기 위한 조건 - 무위당 장일순 선생

-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을 것
- 교육을 부단히 할 것
- 시대에 맞는 협동문화 개발
- 돈은 수단이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 제도가 민주적이어야 함
- 전체를 보는 눈, 협동과 이상과의 현실 조화

\*밑으로 기어라, 계산보지 말아라, 과실을 탐하지 마라!

##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역사 및 창립배경, 사업

### 1) 배경 - 대안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획(97년 IMF 위기상황)

대안사회의 실현은 지금 이곳에서 실현해야 할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대자본에 대항하여 주민참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도시에 걸맞은 산업시스템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경제의 이윤은 지역복지의 개선을 위해 환원되어 진정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2003년 6월 5일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 취지문)

### 2) 10대 사업 과제

- ① 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활성화
- ② 조합원 참여의 확대
- ③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 ④ 지역대학과의 교류증진
- ⑤ 협동사회연구소 설립
- ⑥ 신규 협동조직의 설립지원
- ⑦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 ⑧ 녹색도시의 기반마련
- ⑨ 교육과 문화 활동의 기회 확대
- ⑩ 참여와 자치의 지역사회건설

### 3) 진행한 주요 사업

#### \*네트워크 강화활동

- 정례회 개최(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 임원연수회 개최
- 원주에 사는 즐거움 : 지역의 독립매체 및 사회경제 활성화 정보 매체
- 체육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국제교류 활동

- 한일 협동조합 간 교류 : 일본 오사카 S-COOP, 생활클럽연합회 등
- GMO FREE ZONE 운동 시작 (오사카 S-COOP 제안)
- 기술연수 : 일본 생협 소시지 공장 및 술 공장
- 2010년 6월 : 이탈리아 볼로냐 및 트렌토 지역 협동조합 탐방

#### \*지역 미래 만들기 사업

- 2005년 3대 조례제정 운동 : 학교급식조례, 친환경농업지원육성조례, 보육조례
- 친환경학교급식운동 : 2008년 3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개소  
→친환경 쌀 공급사업, 로컬푸드 식당 운영, 결식아동친환경급식

\*지역현안 대응 : 화상경마장 저지, 골프장 등 환경파괴 정책 대응, 무분별한 재개발 반대운동, 장애인 생존권 운동,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FTA 반대활동,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등

\*로컬푸드 운동 :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교육, 환경, 사회복지 운동 ⇒ 전국 최초로 2009년 12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식량체계 구축.

####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 회원단체 임직원 교육 활동 : 2008년부터 매년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진행
- 인문학 강좌 및 실무 교양 강좌 진행
- 지역에서 실천 가능한 의제 발굴
- 지자체와 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등

#### \*지역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활동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진행(2008년부터 매년 시행)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의 확대·발전(2009년 6월)

## ■ 회원단체 현황

### 1) 전체 현황

- \* 19개 단체 3만 5천여 명의 조합원 (중복 조합원 포함 원주인구의 10%)
- \* 종사자 460여명

### 2) 유형(정관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동체 운동기관 등)

- \* 신용협동조합 - 밝음신협(1개)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원주의료생협(사회적 기업), 상지대 생협, 노인생협(사회적 기업), 문화생협(6개)

- \* 교육 -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참꽃어린이교육협동조합(2개)

- \* 공동체 운동기관 -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갈거리사랑촌(갈거리협동조합), 원주 지역자활센터(누리협동조합) (3개)

- \* 농민 생산자 단체 - 가톨릭농민회, 남한강영농조합법인(2개)

- \* 사회적 기업 - (유)다자원, (합)햇살나눔, 친환경급식맞두레(주), 노나메기, 원주의료생협(중복), 원주노인생협(중복) (6곳)

- \* 주식회사 - (주)살림농산(1곳)

- \* 관련 단체 -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원주생명농업

- \* 관련 사회적 기업 - 행복한 시루봉, 신화마을영농법인, 원주YMCA 아가야 등

- \*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 청년 창업 팀 14개

조직명	창립연도	주요활동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1972년	조합원 약 1만6천700명, 자산 1천억(2011년 현재), 자본금 47억 원, 지역사회 공헌 사업 및 서민경제 베품목
원주생활협동조합	1989년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하는 생활협동조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통한 생활공동체 지향. 조합원 생산자조합원 200명, 소비자조합원 1천200여명, 총사업규모(2009년) 21억7천여만원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1985년	조합원 5천829여명(2011년 말). 공급액 32억2천500여만원(2009년 말),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통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과 함께 지역살림을 위해 노력
남한강 삼도생활협동조합	2003년	조합원수 130여명. 삼도(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접경지역인 부론지역의 농민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명농산물 직거래 활동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2002년	조합원수 2천281명(2011년 말), 매출 12억1천여만원(2009년 말), 출자 7단체(2004년 말). 의료의 본질적 가치인 건강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
성공회 원주나눔의 집	1999년	후원회원 200명.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원주자활센터	2001년	64명의 자활근로사업단, 10명의 자활공동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고용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1999년	25가구(2009년 12월). 학부모인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 터전을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교육자치 공간. 보육과 교육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1976년	가톨릭농민회강원지구연합회로 출범. 출자회원 88명, 조합원 250명.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2005년	조합원 1천200여명,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와 노인 일자리 창출위한 사업 전개, 깨끗한 학교 만들기, 택배사업, 소독방역사업, 식당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음
상지대학교생활협동조합	2005년	조합원 3천200여명, 학생, 교직원, 교수를 조합원으로 해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의 공급과 구매 사업, 조합원의 조합 사업에 대한 지식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사업과 조합원 및 일반 대학인에 대한 홍보사업 등을 펼침
참꽃어린이교육협동조합	2005년	조합원 13가구, 대안교육기관 - 자녀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생명을 일깨우며 살아가기 위한 환경 및 양육·교육 내용을 공유·창출하는 활동
문화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7년	조합원 350여명, 서로 돋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의 발전에 기여, ‘생활이 문화, 문화가 생활’ 사업 추진 및 미품(美品)을 통한 매장 추진
갈거리사랑촌	1991년	91년 갈거리사랑촌 개원, 97년 12월 십시일반 개원, 98년 원주노숙인센터 건립, 2004년 9월 갈거리협동조합 창립, 지역 복지사회 구현
(주)살림농산	2008년	87년 원주 한살림 참·들기름 공장 축성, 2008년 6월 원주 한살림에서 (주)살림농산으로 법인 분리
(합)햇살나눔	2007년 10월	안전한 먹을거리의 합리적 유통을 지향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
(유)다자원	2010년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재활용 홍보 교육, 원주시 재활용센터운영 등(원주환경운동연합 모법인)
친환경급식맞두레(주)	2008년 3월1일	로컬푸드 운동 주관 및 공공급식에 친환경쌀 공급사업, 결식아동급식사업, 로컬푸드 식당 운영
노나메기(주)	2010년	친환경생태건축,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환경생태 교육 등

## ■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조직

- 총회 : 단체 3인(대표자, 실무자, 추천1인) + 각 위원회 위원장 + 사무국
- 이사회 : 각 단체 대표자로 구성
- 집행위원회 : 각 위원회 위원장 + 사무국
- 위원회 : 지역농업위원회, 식생활위원회, 원사슬편집위원회, 협동기금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각 회원단체 실무자 위원회 배속)
- 사무국 : 사무국장, 사무차장

## ■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0 ~ 2011년 주요사업

- 법인 설립 : 네트워크의 법인화(**기본법 연합회, 협의회 가능 : 협동조합 법인**)
- 회원단체 확대 : 갈거리사랑촌 등 6개 단체 회원 가입
- 부문별 네트워크 구축 : 각 위원회 활동 강화
- 교육사업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및 인문학 강좌, 실무교양 강좌
- 협동기금 설치 및 운영 구체화
  -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의 필수 요건
  - \*신규 협동조합 및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공동의 금융기반 조성
  - \*한살림 5% 협동기금 적립 제도화, (주)살림농산 매년 1천만 원 기부
  - \*위원회 설치 : 운영정관, 재원충당 방안 등 마련
  - \*기금 축적의 다각화 : 잉여이익 중 일부 축적, 지역거래 확대, 종사자 MC
- 원주에 사는 즐거움(네트워크 매체) 안정적 발행
- 사회적 기업 활성화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0년 10월 26일 본회의 통과)
  - \*사회적 경제 포털 사이트 구축 \*사회적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 \*사회경제 연대 한마당 축제 개최(2010년 10월 20일 개최)
  - \*사회적 경제 지표 조사 : 사회적 경제 블록 형성
- 새로운 지역 모델 비전 찾기
- 제도개선 사업
  - \*생협법 개정 및 협동조합 기본법 대응활동
  -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 조례제정 및 우선 구매 촉진, 정보제공,
- 원주푸드 육성 : 지역식량 체계 구축 및 원주푸드 종합처리센터 설립 등
- 사회적 기업 권역지원기관 업무 수행

## ■ 협업(協業) 네트워크 형성(사상과 사업의 그물망 같은 연결)

- 상호부조 시스템 논의 경과(위기 극복 방법으로서의 상호부조)
    - \* 2010년 7월 1일 네트워크 1차 집행위 결의
    -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 경제 지표 조사 진행
    - \* 원주한살림 사무국장, 사회적 기업 지속 가능성 방안 연구
  - 상호부조 방안
    - \*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 조직 네트워크 체계 구축 심포지엄
    - \* 조합원 및 회원 연계 등을 통한 상호부조시스템 개발
    - \* 물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사회경제장터(쇼핑몰) 구축
    - \* 협동카드 등을 통한 조합원 및 회원, 임직원의 물품 및 서비스 이용 독려
  - 생협법 개정에 따른 원주지역 생협단체 대응방향
    - \* 2010년 10월 20일 생협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 \* 2010년 12월 9일 네트워크 3차 집행위 - 6개 생협단체 간 조율하기로 합의
    - \* 2010년 12월 28일 : 6개 생협단체 실무자 회의
- ▷ 협동기금 적립 : 각 단체 총회 안건 상정 요청
  - ▷ 업무협약 : 생협법 제46조(사업의 이용)와 관련해 6개 생협단체가 업무협약
  - ▷ 생협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시 상호 서비스와 생산품 우선구매 조항 추가
  - ▷ 생협법 제45조(사업의 종류)와 관련해 다중 조합원 이용 매장 건립과 공산품 취급 원칙을 합의해 가기로 함.
- 6개 생협단체 조합원 상호 이용협약(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 \* 본 협약에 동의하는 원주 지역 6개 생활협동조합은 2011년 7월 1일부터 모든 조합원의 상호 간 사업 이용을 조합원 이용으로 인정한다. 이는 2010년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46조 2항’에 따른 것이다.
    - \* 각 생활협동조합 단체는 상호 협약한 생활협동조합 단체의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 협약한 생활협동조합의 상호 조합원 이용에 대한 확인 절차는 1년에 1회 이상 조합의 실무진이 참여하여 문서로 보관한다.
    - \* 조합 및 조합원 상호 이용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 원주 사회적 경제 블록화 사업 내용 및 방향(2011년 3월 19일)

생명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협약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원주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인간적 사회서비스 실현, 협동을 통한 사회적 목적 구현’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이 경쟁과 이윤추구로 대변되는 주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위해 협동정신으로 서로를 돋는 것이 유력한 길임을 인식하고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 사회적 경제 블록화 사업 심포지엄(2011년 3월 19일)을 계기로 아래와 같이 협약합니다.

1. 우리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단체와 사회적 기업 간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입니다.
2. 우리는 상호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통해 각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창출되는 잉여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할 것입니다.
3.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각 조직의 주인인 조합원·회원 등의 참여 보장과 정보전달을 위해 힘쓰며 사회적 경제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우리는 전체를 위해 스스로 각 조직의 민주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 등을 실천할 것입니다.
5. 우리는 경쟁과 이윤추구로 대변되는 주류 경제 질서에 대항하여 돈 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3월 19일

갈거리사랑촌,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남한강영농조합법인, 문화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지대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 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지역자활센터,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유한회사 다자원, (주)살림농산, 참꽃어린이교육협동조합, (합)햇살나눔, 신화마을영농조합법인, 원주YMCA 아가야, (주)노나메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행복한 시루봉

- 네트워크 회원단체 및 사회적 기업 분야 : 상호부조 시스템 확립 방안

농업 가공·유통	소비자	사회서비스	교육	신용	문화	환경·생태
가톨릭농민회	원주한살림	원주 나눔의집	소꿉마당	밝음신협	문화생협	(주)노나메기
삼도생협	원주생협	자활센터	참꽃학교	누리 협동조합	신화마을	(유)다자원
원주생협	노인생협	갈거리사랑촌	꺼벙이 길 찾기	갈거리 협동조합		
원주한살림 (생산자)	의료생협	위스타트				
(주)살림농산	상지대생협	원주YMCA 아가야				
행복한 시루봉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합)햇살나눔						
신화마을						

- ▶ 농업 및 가공 유통 : 9개 조직
- ▶ 소비자 분야 : 5개 조직(노인생협 - 일자리)
- ▶ 사회서비스 : 5개 조직
- ▶ 신용 : 2개 조직
- ▶ 문화 : 2개 조직
- ▶ 환경생태 : 2개 조직  
(사회적 기업 9개)

- 상호부조 내용

상호부조 내용			
조합원·회원 확대	매출증대(공동매장)	교육 및 강사 Pool 구성	금융 허브化
협동기금	일자리 창출	인적·물적 후원연계	상호출자
사회서비스 제공	⇒ 상호 부조 내용을 시스템화(블록화 = 보호된 시장 형성)		

- 조합원 및 회원 참여 방안

\* 협동카드에 대한 고민

금융체계 개편안		
조합원 및 회원	밝음에 체크카드 계좌 개설	회원단체·사회적 기업 결재에 사용
회원단체·사회적 기업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잉여발생)	잉여의 일부를 협동기 금으로 적립하고 포인트 카드 적립 용 하드웨어 설치
밝음신협	체크카드 계좌 개설 조합원 및 회원에게 포인트 카드 발행(협동카드)	회원단체·사회적 기업 이외의 가맹점 확대(포 인트 카드 하드웨어 설치)
조합원 및 회원	포인트 적립으로 현금처럼 사용	협동기금 적립을 통한 소속 조직 발전 및 각 종 서비스 및 할인혜 택

\* 공동 홈페이지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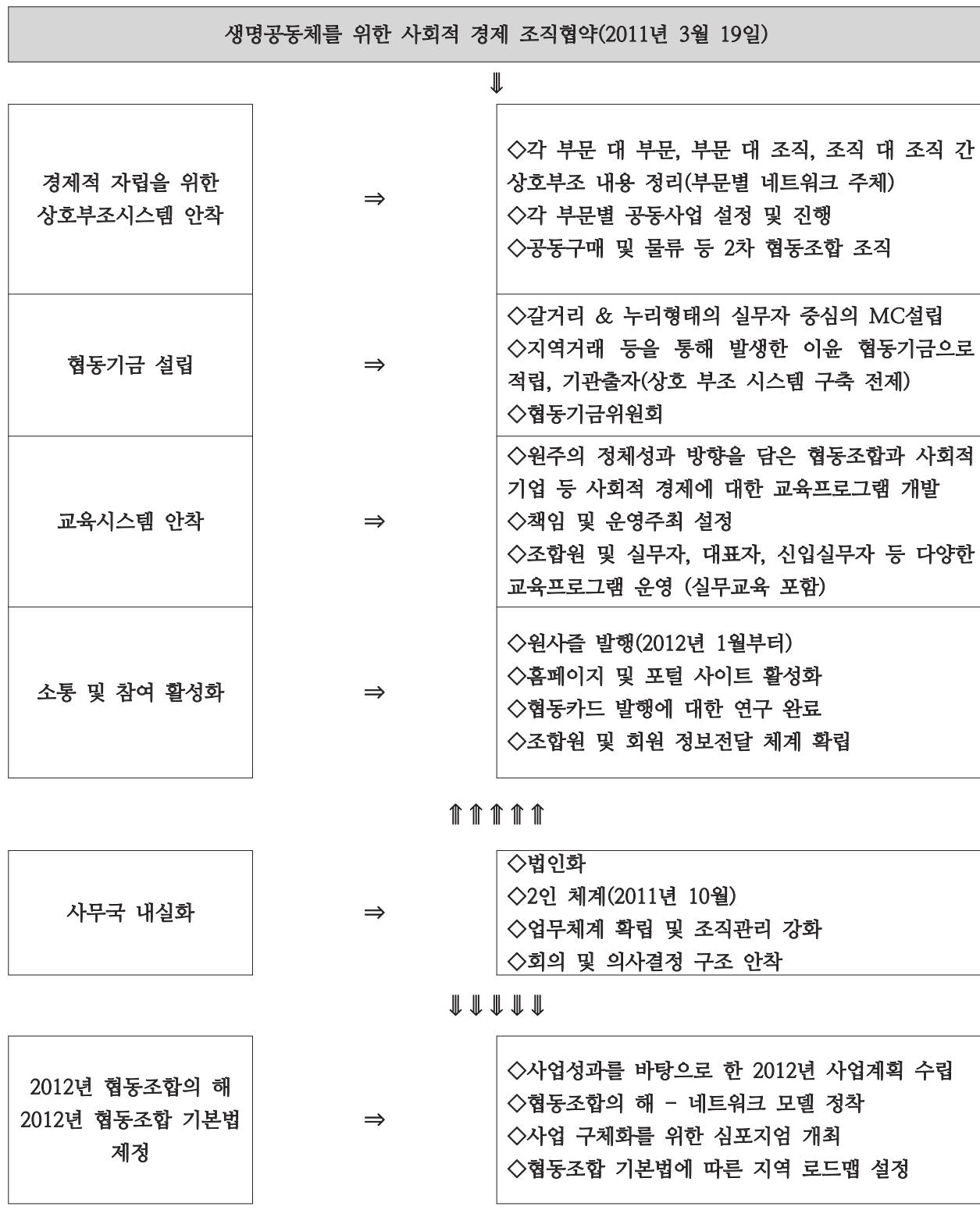
- ◇ 각 단체 소개, 인적·물적 공급 및 서비스 분야 및 이용방법 총정리
- ◇ 원주N과 연동해 포털 구축(현재 구축 중인 네트워크 홈페이지)
- ◇ 포털사이트 검색 용이성 확보
- ◇ 각 단체 홈페이지와 연동
- \* 언론 및 ‘원·사·즐’을 통해 홈페이지 홍보
- \* 원주지역 실시간 뉴스 서비스 제공 등 일반 시민 견인 방법 강구

- 협동기금 조성 방안



- 2011년 2차 정례회 주요 의결사항(2011년 9월 29일)
  - \*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법인화(기본법에 맞춰 협동조합 설립)
  -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기금 및 교육시스템, 방문자 관리 시스템 안착

- 발전모델



## ■ 2012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 - 2012년 사업 목표

- \* 협동조합 모델 도시로서의 위상 정착
- \* 단체 간 상호부조 시스템 안착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
-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교육 프로그램 안착 및 운영
- \* 협동기금 조성 및 운영 체계 안착
- \* 조합원 및 회원참여 활성화를 통한 조직 및 사업 안착
- \* 네트워크 10년, 향후 10년 비전 제시
- \* 협동조합 만들기 지원 활동 전개
- \* 사무국 운영 내실화 및 원사를 발행 등 기본 사업 철저

### - 사업계획

#### \* 협동조합의 해 사업계획

◇ 협동조합기본법 워크숍(2012년 3월 9일)

◇ 협동조합, 원주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2012년 5월 12일)

◇ 사업 개발 및 실천 사업(위원회 별 사업)

- 상호부조 시스템 안착 및 가동 :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
- 협동기금 조성 구체화
-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안착
- 원주푸드협동조합 준비(물류 등)
- 조합원 및 회원 참여 활성화 유도사업 안착 : 협동카드, 홈페이지, 원사를 등
- 정보전달 체계 확립 및 조합원 기층 단위 복원(의사결정 구조 복원)

◇ 협동조합 대중화를 위한 종합 기획프로그램 행사

◇ 협동조합 주간(7월 2일 ~ 7일(협동조합의 날))행사

◇ 사업 평가 워크숍 및 가을걷이 행사

#### \* 기타 사업 계획

◇ 네트워크 역할 담당할 협동조합 법인 설립

◇ 회원단체 확대

◇ 협동사회경제연구원 강화

◇ 방문연수 사업 체계화

◇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강화

◇ 국제교류 활동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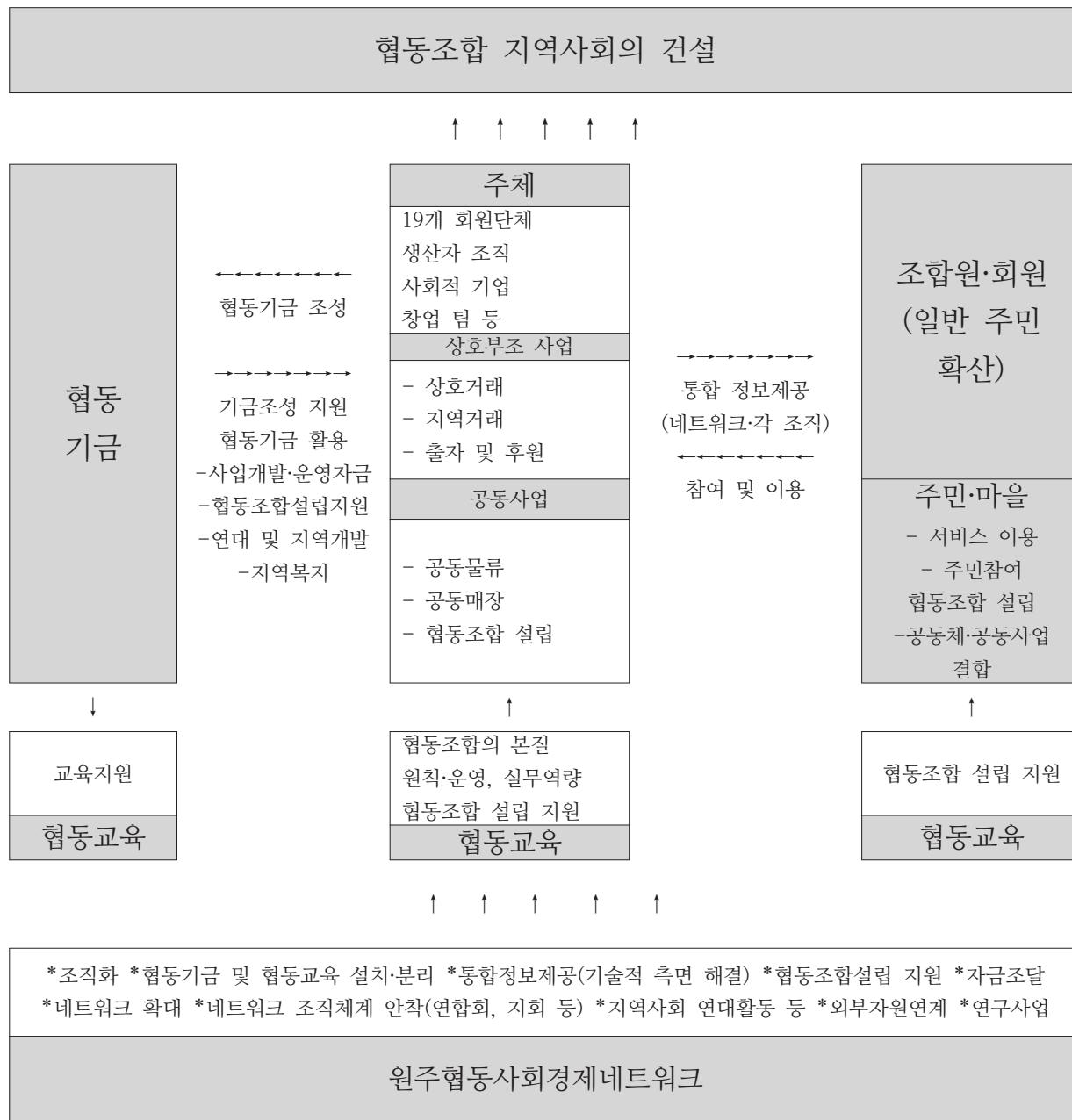
◇ 네트워크 10주년(2013년) 준비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지원 업무

## ■ 집행체계 개편(2012년 1차 이사회 의결사항)

- 위원회 신설 : 교육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 기존 위원회 : 지역농업, 식생활, 국제교류, 협동기금, 원사출
- 집행위원회 : 7개 위원회 위원장 + 사무국(간사)
- 각 회원단체 실무 책임자 및 희망자 각 위원회에 배속
- 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상호부조 등 논의

## ■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 체계도



\* 상호부조 : 사업의 그물망 같은 연결, 기본법을 근거로 한 공동의 협동조합 설립

◇ 협동조합 설립 - 다양한 상상력 및 조합원 근간 복원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

- 공동 물류 협동조합(공동 구매)
- 농촌 다기능/다목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 도시 마을 다기능/다목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 공동의 필요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 - 일자리 창출, 보편적 복지 등
- 안정적 현재 협동조합 조합원의 요구

◇ 상호부조 사업 - 성공한 경영모델

- 조직별 구체적인 사업 요구 등을 파악, 자원연계
- 협동기금과 교육사업 등을 함께 추진
-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 이로운 점, 지역사회 건설 등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 각 조직의 객관적 지표 파악

■ 원주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 자립과 다종·다양한 형태의 활용

19개 네트워크 회원단체	생산자 단체 등	마을기업
원주밝음신협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태장동 LH마을형 사회적 기업
원주한살림생협	원주생명농업	용수골생태마을네트워크
원주생협	횡성가공생산자연합회	회촌마을에코문화투어사업단
원주가농	관련 사회적 기업	기타 관련 (예비)사회적 기업
남한강영농조합법인	행복한 시루봉	전통문화예술단 '아울'
상지대생협	신화마을영농조합법인	(사)한국청년센터 '새움'
원주의료생협	원주YMCA 아가야	(합)대은
원주노인생협	연구단체	(주)우성어폐렬
원주지역자활센터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주)청코리아
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청년창업 팀	(사)독서새물결
공동육아 소꿉마당	(주)배낭 멘 개구리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
참꽃어린이학교	미디어 나무	지원기관
(주)살림농산	유기육모 연구모임	상지대산학협력단(청년창업 육성)
문화생협	(사)음악 만들기 앙상블	사회적 기업 통합지원센터
갈거리사랑촌	15HANDS	기타
(유)다자원	발표초콜릿 '황후'	위스타트태장마을센터(의료생협)
(합)햇살나눔	장애인 공예품	주거복지센터(의료생협)
(주)친환경급식맞두레	+7개 팀(2012년 선정)	밝음지역아동센터(의료생협)
(주)노나메기	*55개 조직 + 문화 조직 + 2012년 신규 단체 등	

## ■보론 1 - 네트워크 구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사회적 경제 운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공동 미래비전 도출
- 상호 출자 및 상호거래 시스템 구축(세부적 정보교환)
- 개별조직의 민주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방안 도출
-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동체 운동기관)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
- 임여이익의 적립과 적립목적에 활용 ⇒ 지역금융 시스템
- 경영 및 교육지원 등(네트워크 사무국 구조)
- 네트워크 의사결정 구조 확립
- 각 조직 조합원(회원) 의사·정보전달 체계
- 인적 교류(파견 및 전환배치)
- 네트워크 각 단체 간 임금 및 노동조건의 가이드라인
- 공동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실천
- 비경제적 업태에 대한 네트워크 지원
- 국가, 지방정부 및 연계단체와의 협력
- 홍보 및 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윤리적 소비)

## ■보론 2 - 사회적 경제 영역 발전을 위한 방안

◇ 협동조합 정신 등 사회경제 영역의 가치와 지향점 대중적 공유

◇ 선순환 구조와 사회적 경제 블록 구축을 위한 상호부조 시스템 확립  
→ 사회적 경제 블록의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화

◇ 영역확대를 위한 노력 → 네트워크 내 회원단체 확대와 영역별 구축

◇ 사회적 경제 지표를 통한 네트워크의 가능성과 규모 파악  
→ 사회적 경제 지표를 통한 역량 파악 및 홍보, 제도개선에 활용

◇ 역사와 브랜드 홍보를 위한 체계 확립

◇ 사회적 경제 가치를 통한 발전계획 및 지역의 미래상 정립

◇정부 –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및 투쟁(제도 및 지원)

◇국제·국내적 연대와 연구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한 가치 및 제도, 시스템의 학습

◇주민 삶을 책임지는 새 영역 구축

→새로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창립 지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 확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협동기금 설치 및 운영

◇매체의 안정적 발행과 내용의 대중화

◇사회경제 일꾼 재생산을 위한 비전의 공유와 교육의 장 마련

→미래 비전을 통한 재생산 및 지속적인 만남과 교육의 장 마련

◇네트워크의 서비스 프로그램 정착 및 안정화, 체계화

→네트워크 강화 및 서비스 프로그램 창조

◇한국식 전형 창출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 운동기관, 협동조합 형 사회적 기업 등

◇민주주의 확립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기여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주민조직

# **세계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최근흐름**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장종익 교수



#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최근 흐름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 1. 머리말

협동조합(cooperatives)이란 무엇인가?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들이 1896년에 설립한 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 1995년에 발표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성명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 다른 조직 형태와는 달리 매우 복잡한 성격의 조직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본고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운동의 양 측면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협동조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시장 경제와 더불어 발전해왔는가? 둘째, 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내에는 주식회사가 지배적인 기업소유형태로 자리잡고 있는가? 셋째, 주식회사가 지배적인 기업소유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등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존하고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주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답하려고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존재근거, 그리고 기업 소유형태의 차이가 지니는 의미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을 요구하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상대적 장점과 단점, 그리고 발전전략 수립 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만으로는 협동조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혹은 투자자소유기업(investor-owned firm)과 달리 협동조합에는 ‘운동(movement)’이라는 용어가 따라다니는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왜 19세기와 20세기의 역사에서 노동조합운동 및 농민연맹운동과 더불어 협동조합운동이 중요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여 왔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찰은 협동조합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준다.

본고는 협동조합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이상과 현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2. 협동조합의 태동과 발전

인류역사에서 인간이 경제생활을 조직화하는 지배적 제도로서 원시공동체,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적 제도, 그리고 사회주의적 제도가 발전해왔지만 부차적인 형태로서 협동조직이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도 발전해왔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 노동하는 주체들 사이에 노동, 노동수단, 화폐의 품앗이형태는 그 명칭이 다를 뿐 각 나라의 전근대시대에서도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서 협동조합이 발전한 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근대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자본과 임노동간의 관계, 주식회사제도, 시장제도 등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에 대하여 노동자와 농민, 수공업자, 소상인 등이 설립해온 조직중의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은 설립주체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타났다.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보험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전력공급협동조합 등이 설립되었는데, 앞의 세 가지 종류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이었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44년 영국의 랭커셔주의 로치데일소비자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19세기 말에 영국에는 17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1,439개의 조합이 성장하였다. 정직한 거래로 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재화로 그 영역을 확대한 소비자협동조합모델은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운동의 가장 첫 번째 형태로 나타났던 소비자협동조합은 가장 먼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50년대말에 소비자협동조합이 성장을 멈추고 그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다.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의 생필품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950년대 말에 약 11%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4%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Birchall, 1997). 심지어 파산하거나 주식회사로 전환, 또는 주식회사에 매각되는 사태가 지속되었다. 독일최대의 도르트문트소비자조합은 1998년 초에 사실상 도산하였고, 오스트리아소비조합은 1995년에 파산을 선고받았다. 그리하여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Birchall, 1997).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반면에 일본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이 크게 발전하였고, 핀란드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최근에 40%의 시장점유율을, 스웨덴은 2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Co-op Suisse와 Migros는 최근에 각각 17%와 3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Birchall, 2009).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이 발전한 개발도상국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세기 중반 독일에서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운동은 곧이어 크게 성공하였다. 슈체-델리치(Schulze-Delitzsch)가 도시지역의 수공업자, 소상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립한 신협은 1905년에 1천개 이상의 조합, 약 6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였으며, 라이파이젠(Raiffeisen)이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립한 신협은 1905년에 1

만 3천 개의 조합, 약 12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독일의 신협모델은 19세기 후반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대륙으로도 확산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스칸디나비아반도,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호주,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신협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부자들을 위한 사설은행만이 존재하였던 당시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 가난한 자들이 고리대자본을 배격하고, 예금자와 차입자로 조직화되어 자신들을 위한 금융중개조직을 설립하였고, 이 조직을 스스로 운영해왔던 것이다.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신용협동조합은 크게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Council)와 유럽협동조합은행연합회(Association of European Cooperative Bank)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신용협동조합들은 이 두 조직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sup>1)</sup> 1969년에 창립된 세계신협협의회는 2008년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4만 9천여개 신협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2)</sup> 이들은 1억 77백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의 조합원수가 1억 4백만 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는 많지 않다. 아프리카대륙에서는 베니, 베니파소, 아이보리코스트, 케냐, 말리, 토고 등에서 신협이 발전해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이 가장 발전해 있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에서 신협이 발전해 있다.

2008년 현재 유럽협동조합은행연합회에는 26개 전국연합회가 가입되어 있고 이 연합회에 가입된 1차 협동조합은행은 총 4,461개에 달한다. 협동조합은행은 약 52백만 명의 조합원과 약 160백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의 협동조합은행은 유럽 예금시장의 21%, 대출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ECBA, 2008). 특히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협동조합은행이 상당히 발달하였다. 지점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03년에 오스트리아는 52.6%, 프랑스는 60%,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는 각각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용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은행은 소비자협동조합과는 달리 선진국과 중진국에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과 더불어 크게 발전해온 협동조합의 종류는 농협이다. 19세기 중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치즈 등 유가공부문에서 농협이 가장 먼저 탄생하여 여러 농축산물과 여러 기능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초기 농협의 확

1)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협중앙회가 세계신협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새마을금고연합회나 농협중앙회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특히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농업신용협동조합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2) 이 통계는 세계신협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신협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산은 독과점 등 시장제도의 취약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농협은 농축산물의 판매협동조합, 가공협동조합, 영농자재의 구매협동조합, 농기계 등의 공동이용협동조합, 농업공동생산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협은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낙농부문에서 농협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80%에 달하였고 덴마크의 양돈부문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였다. 미국의 전체적인 농축산물판매의 시장점유율은 1980년대 말에 32% 수준에 달하였다. 농협은 2차 및 3차 산업의 발전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업비중의 소로 농업협동조합의 수가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여전히 중요한 기업형태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농협은 신협과 소비자협동조합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농협은 선진국에서의 설립 배경과는 달리 대부분 식민지시대에 제국주의의 농업개발의 수단 혹은 정치적 지배의 목적으로 하향식으로 설립된 배경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하향식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은 탈식민지화 이후 개발연대라고 일컬어지는 1960-70년대에 개발독재정권들에 의해서도 강화되었다(Birchall, 1997).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농협과는 달리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일부 지역 및 일부 산업부문에서 제한적인 규모로 발전하여 왔다. 즉,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만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발전하였다. 샤를루 푸리에(Charles Fourier)의 사상에 힘입어 1833년에 프랑스에서 최초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확산되었으나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여 1903년에 주물제조, 안경제조, 택시운전 등 세 가지의 대규모 노동자협동조합과 340개의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1906년에 25개의 제빵협동조합, 153개의 공업협동조합, 454개의 노동·공동서비스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Birchall, 1997).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주로 발전해온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다른 나라도 확산되지 못하고 1950년대이후 스페인의 바스크(Basque)지방의 몬드라곤(Mondragon)에서 집중적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협동조합 종류이외에 주택협동조합은 북유럽에서, 임업협동조합은 핀란드에서, 전력공급협동조합은 미국에서, 의료협동조합은 브라질에서 주로 발전해왔다. 이념적 측면에서 다양한 갈래의 협동조합을 연구해온 멜니크(Melnyk, 1985)는 이상에서 서술한 협동조합을 사적 소유권과 자본주의를 기본적으로 인정한 바탕위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방어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의 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한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하에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하에서도 발전하였다. 소련의 콜호즈, 중국의 인민공사, 북한의 협동농장,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이러한 사회주의적 협동조합들은 사적 소유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협동조합과는 크게 다르고 사회주의의 몰락과 개방의 물결 속에서 대부분 해체되어 왔다.

협동조합의 세 번째 갈래는 공동체적 협동조합이다. 지금도 지구상 여러 곳에서 소규모로 발견되고 있는 공동체적 협동조합은 사회제도로부터 최대한 고립된 형태

의 자급자족적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로버트 오웬이 1825년에 영국의 글래스고우(Glasgow)의 오비스톤(Orbiston)지역과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뉴하모니(New Harmony)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하여 2년만에 완전히 실패한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공동체적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에 시도된 백운산농장이나 오늘날 화성 빌안의 야마기시농장, 미국의 경우 아미시(Amish)공동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협동조합은 사적 소유를 최소화하고 공동체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갈래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관점에서 설립된 협동조합들이다. 이는 사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지만 일정한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유주의적 협동조합들 사이에 강력한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노동의 주권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시도하여 형성된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인구 2만 여명의 몬드라곤 지역에서 100 여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의 복합체인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와 이탈리아 북부에 소재한 인구 38만 여명의 도시인 볼로냐(Bologna)에서 약 400 여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의 연대체가 잘 알려져 있다 (Whyte, 1991; 김태연 외, 2010). 이러한 협동조합 지역사회 혹은 협동조합복합체는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신협, 농협과 더불어 다양한 노동자생산협동조합과 교육, 육아, 연구 및 훈련관련 협동조합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네 갈래의 협동조합 중에서 본고는 자유주의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주요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갈래의 협동조합은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경제제도 하에서 시장경제와의 교환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이나 공동체적 협동조합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3. 협동조합의 실패, 진화, 그리고 혁신

자본주의하에서 등장한 적지 않은 협동조합은 성장하고 진화하였고, 실패한 협동조합도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비영리기업과의 혼합적 형태로 혁신된 협동조합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협동조합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존재 근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존재 근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장이라는 거래기제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 그리고 지시와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기업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들은 시장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모든 경제활동을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존재근거는 시장의 불완전성, 혹은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찾아질 수 있다. 시장과 기업을 생산을

조직화하기 위한 서로 대안적인 제도로 바라볼 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로널드 코즈(1937)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시장은 자원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격신호를 통하여 자발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가격기제를 본질적 자원배분수단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수평적·수직적 통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코즈는 이러한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불렀다. 거래비용은 적절한 거래상대자를 탐색하고 거래 대상의 가격을 설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계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측정하며, 계약의 불이행 시 조치를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거래비용 혹은 계약비용의 개념으로는 기업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등 기업조직의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즈만(Hansmann, 1988, 1996)은 주식회사와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현실에서 공존하는 현상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계약비용(contracting costs)과 주식회사적 또는 협동조합적 방식의 소유비용(ownership costs)과의 종합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sup>3)</sup> 소위 기업의 소유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sup>4)</sup>

기업의 생산활동은 자본, 노동, 원료의 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조달된 투입재에 기술과 경영이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자본, 노동, 원료, 상품의 시장구조와 거래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시장을 통한 계약비용'이 가장 높은 측에서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유인이 높아진다. 즉,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본조달과 관련된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자본의 직접 제공자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소위 투자자-소유 기업이 되고, 노동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비용이 높을 경우 노동의 제공자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노동자-소유 기업이 되며, 원료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비용이 높을 경우 원료의 공급자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원료공급자-소유 기업이 되며, 생산된 제품의 소비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비용이 높을 경우 소비자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소비자-소유 기업이 된다. 한즈만은 이러한 시장에서의 계약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원인을 기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한 독과점이윤의 추구, 거래특정적인 투자관계를 바탕으로 한 준지대 추구, 정보의 비대칭 상황 하에서의 정보지대(informational rent)의 추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족,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측정의 곤란성을 이용한 기업의 소비자 착취 등이라고 제시한다.

3) 여기에서 비교분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소위 '유토피아'의 단계와 '운동'의 단계를 거쳐 '시스템'의 단계에 도달한 협동조합의 조직구조(Melnyk, 1985)를 대상으로 한다. 주식회사도 규모가 작은 수준에서는 기업의 소유비용이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협동조합도 창립 1세대가 주도하는 시기에는 협동조합의 소유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4) 자세한 내용은 장종익(2010a)를 참조할 것.

한즈만은 이러한 시장에서의 계약비용이 기업의 소유형태(조직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어느 집단이 그 기업을 소유하는가에 따라 그 기업의 소유비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유형태 자체에서 수반되는 비용도 기업 소유 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소유비용은 소유자들 간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비용, 경영자대리인비용, 그리고 기업과 종업원 사이의 기회주의적·전략적 행동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어느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이 세 가지 종류의 소유비용 상의 상대적인 우위성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자-소유 기업은 투자수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소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동질성이 높고 기업성과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비용과 경영자대리인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러한 유리성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자-소유 기업은 기업과 종업원간의 기회주의적·전략적 행동의 가능성이 낮은 장점이 있다. 기업 소유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유자들 간의 이해의 동질성, 기업성과측정의 용이성, 그리고 기업과 종업원간의 이해관계의 일치성 등이 제시될 수 있다(Hansmann, 1996; Miller, 1993).

서로 다른 소유형태의 기업을 시장계약비용과 소유권 행사의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주식회사가 왜 지배적인 기업소유형태가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왜 신협과 농협이 노동자협동조합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주식회사방식에 비하여 재화의 생산 및 공급을 조직화함에 있어서 의사결정비용, 경영자대리인비용, 위험담지비용(risk-bearing costs)의 모든 측면에서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상대적 비효율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규모가 작고 규모가 큰 것들은 택시, 버스 등 노동자의 동질성이 매우 높은 운수산업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sup>5)</sup>

협동조합을 기업소유형태 혹은 기업조직형태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최근 들어 협동조합에서 나타나는 실패, 진화, 혁신의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주식회사형태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농협과 신협은 시장 및 기술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업조직의 환경적응능력이 기업생존과 지속적 발전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간략히 서술한 1960년대에 발생한 유럽과 북미에서의 소비자협동조합의 쇠퇴는 전통적인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통적인 독과점

5)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몬드라곤의 경우 인민금고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중앙집권적 의사 결정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각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규모확대에 따라 의사결정비용이나 위험담지비용, 경영자대리인비용 등이 확대되는 것을 낮출 수 있었다.

문제가 약화되고 이러한 독과점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 소비자협동조합의 장점이 급속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소비자협동조합이 합병을 통한 대규모화 및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방식을 모방해왔지만 자본조달, 제품조달, 체인 전체의 조직관리구조 측면에서 주식회사형 소매기업의 장점을 능가할 수 있는 협동조합 고유의 장점을 발견하고 실현하는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농협도 1980-90년대 이후 무역장벽의 해소와 정부의 농업보호 및 지원정책의 후퇴 등으로 인하여 농협의 전통적 기능 즉,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방어기능이 크게 줄어들고, 시장수요에 적합한 농식품의 공급기업으로서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존 농협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왔다. 첫째, 규모화의 이익을 도모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의 합병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합병은 대부분 1차 농협들 간에 추진되었고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규모화된 1차 농협의 탄생으로 중간단위의 연합조직들은 해산하거나 흡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품목농협에서 강하게 나타났다.<sup>6)</sup> 반면에 종합농협이나 구매농협의 경우 연합조직으로 사업이 집중화하고 1차 농협은 연합조직의 지점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대모화된 1차농협이나 대규모연합조직들은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로 확산되었다. 유럽과 북미의 많은 대규모농협들이 우선주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거나 우선주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외부 자본을 조달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외부 자본과 우수한 경영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농협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농협도 관찰되고 있다(장종익, 2010d).

이러한 기존 농협의 대규모화 추구 및 자본조달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노력은 일부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00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농협이자 가장 유명한 농협들이 파산하거나 투자자소유기업으로 전환된 것을 예로 들을 수 있다.<sup>7)</sup> 이러한 대규모농협의 실패 사례와 동시에 미국에서의 1990년대는 새로운 조직구조의 농협이 등장한 시대였다.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의 가공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위 신세대협동조합(new generation cooperatives)은 1980년대 초 10여개에서 2003년에 147개로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Fulton 외, 2006). 신세대협동조합은 기존의 전통적 농협과는 소유와 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한된 지역 내에 동질성이 강한 농민들이 고부가가치사업을 추구하는 소규모 농협이라는 점에서 기존 농협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출자증권의 거래, 출하권과 출자의무의 비례적 연계 등을 특징으로 한 "비례형 지분거래 협동조합"(Nillson,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례형 지분거래 협동조합적 모형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의 일부 농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6) 이는 소비자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에 나타난 중앙조직 기능의 강화 경향과는 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종익(2010b)를 참조할 것.

현상들을 볼 때, 농협의 소유와 이용관계를 특징화하는 조직모형은 점차로 다양해지고 있다.

선진국의 신협과 협동조합은행도 1980-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혁명이라고 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의 격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진국 대부분의 신협과 협동조합은행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사업의 다각화 및 유니버설 뱅크(universal bank)화를 추구하였고,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1차 협동조합의 합병 또는 연합조직간의 합병을 통한 규모화와 네트워크 중앙조직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 그리고 자본조달구조 측면에서는 새로운 자본조달방식의 도입과 일부 협동조합중앙은행의 주식회사화를 도모하였다.<sup>8)</sup>

선진국의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은행, 보험, 증권 등 간의 업무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 신협과 협동조합은행은 단순한 저축 및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소유금융기관처럼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1차 조합에서 대출되지 않은 여유자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중앙조직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측면에서 신협과 협동조합은행을 초기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해 볼 때, 선진국의 신협과 협동조합은행은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즉 신협과 협동조합은행은 금융배제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초창기 설립목적이 더 이상 주요한 목적이 아닌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의 신협과 협동조합은행은 사업영역, 사업대상, 자본조달구조, 조직구조면에서 투자자소유은행과 유사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장의 경쟁적 구조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장점을 흡수하여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숙 단계에 진입한 선진국의 신협과 협동조합은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지배구조와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통제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4. 새로운 기업형태의 등장-사회적 협동조합 및 마이크로 파이낸스

세계 협동조합 부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과 유사한 기업형태들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과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기업조직은 전통적 협동조합과는 상당히 다르고 비영리기업과 협동조합의 복합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르투칼에서는 사회적 연대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 캐나다 퀘벡에서는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종익(2011)을 참조할 것.

cooperative), 프랑스에서는 공익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등과 같이 유사한 이름으로 주로 선진국에서 발전해왔고,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대출만을 취급하는 마이크로크레딧과 더불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혁신적 기업형태가 등장한 배경과 그 특징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 협동조합 형태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1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다 큰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경제활동조직으로 주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의 전달,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독특한' 기업들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독특함'이란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논의되어온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의 교집합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Defourney, 2001). 사회적 기업이 주로 유럽에서의 실천적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한 학계의 노력도 주로 유럽에서 이루어져 왔다.<sup>9)</sup> 특히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연합 1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EMES(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Network가 수행한 연구들이 주요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EMES 네트워크는 유럽 15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마련하였는데, 그 결과 제시된 기준은 네 가지의 경제적 기준과 다섯 가지의 사회적 기준이다(<표 1> 참조).<sup>10)</sup>

<표 1> EMES 네트워크의 사회적 기업 기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목적
- 높은 자율성	- 시민그룹의 주도로 설립
	- 자본소유권에 기초하지 않는 의사결정

9) 반면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해온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개념은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 이윤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목적의 기업, 그리고 자선활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이윤추구기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Kerlin, 2006). 본고는 사회적 기업이 일종의 기업조직형태의 혁신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유럽형 사회적 기업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0) EMES 네트워크는 이러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대체로 적용될 수 있는 조직들이 다양한 이름과 지위를 가지고 유럽 각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조직들을 일컬어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것으로 제안하였다(Defourny, 2001).

-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 최소 수준 이상의 유급노동	권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 제한된 이윤배분
--------------------------------------	------------------------------------

출처: Defourny, 2001

위의 <표 1>에서 제시된 사회적 기업의 기준은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협동조합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사회적 기업의 기준은 애매한 측면이 적지 않다.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적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실체로서 존재함과 동시에 많은 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에 법적 지위를 마련하였다. 북미에서는 캐나다 퀘벡주가 유일하게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연대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1997년에 마련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각국의 법적 형태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협동조합 모형, 회사 모형, 개방식 모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최근에 OECD 연구팀 (Cafaggi and Iamiceli, 2009)이 유럽 각국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적 규정을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사회적 기업의 핵심적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 유럽과 캐나다 퀘벡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법률적 지위

연도	국가	법률
1991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법: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능의 협동조합을 정형화시킴
1995	벨기에	사회적 목적 기업(social finality company)법: 협동조합, 일반기업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할 때 이를 확인해주는 법
1997	캐나다 퀘벡	협동조합법을 수정하여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의 지위를 보장: 서비스이용자, 노동자, 후원자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1998	포르투갈	사회적 연대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법
1999	스페인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initiative cooperative)법
2001	프랑스	협동조합일반법 내에 공익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society, SCIC) 추가: 노동자, 이용자, 제3자 등이 균등하게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003	핀란드	일자리통합 사회적 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법
2004	영국	지역사회이익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법
2005	이탈리아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법: 사회적 협동조합 이외의 사회적기업 적 성격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
2006	폴란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법

출처: Cafaggi and Iamiceli(2009)을 바탕으로 작성

사회적 기업은 i)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고, ii)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을 위한 투입요소들의 소유자들이 각기 다양한 기준으로 투입요소들을 제공하며, iii) 형성된 자본이 기본적으로 분할적이지 않으며(indivisible), 투자자본에 기초한 이윤의 배분을 제한하며, 자산동결조치로 인하여 조직의 판매가 불가능하며, iv)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에 기초한 다중 이해관계자의 지배구조 등 네 가지의 핵심적 조직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 사회적 목적: 사회적 기업은 각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 향상에 기여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일정 지역 내의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참여와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이행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역 혹은 사회 전체에 정(正)의 외부 효과 (positive externalities)를 발생시키거나 투자자-소유 기업 혹은 전통적 협동 조합들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비영리생산기업의 그것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비영리생산기업의 목적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의 조직화 방식: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수행은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의 조직화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자본, 노동, 원료, 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수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투입요소의 제공자들이 전통적인 기업과의 거래 시와는 다른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에 자신들의 투입요소를 제공하게 된다. 자본 제공자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자산포트폴리오의 특성 등에 따라 출자, 대출, 신탁, 정부보조,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을 제공한다. 출자자본(equity capital)의 경우에도 수익률의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보다도 시장수익률 이하의 배당과 사회적 목적의 달성이이라고 하는 혼합된 가치(blended value) 창출에 보다 관심이 높은 일종의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의 공급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Emerson, 2003). 또한 자본 제공의 주체도 일반대중, 기관투자자, 특정목적 펀드, 정부펀드, 은행, 종업원, 이용자, 후원자 등 다양하다.

또한 노동과 경영의 제공자들도 노동 혹은 경영능력의 한계생산성에 부응하는 금전적 보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일의 참여에서 얻는 높은 직업만족도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의 보유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고용과 자원봉사 등 노동과 경영의 획득방식이 전통적인 기업형태보다 다른 기준 및 다양성을 띠게 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생산기업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조직화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iii) 사회적 기업에서의 소유권의 제약: 사회적 기업의 목적과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조직화방식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업에서의 소유권은 전통적인 형태의 기업에서의 소유권과는 다르게 규정된다. 우선 잔여재산청구권이 현저히 제약된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투하된 자본의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의 수행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투하된 자본은 분할(지분화)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윤배분에 있어서 배당률과 총 배당액을 제한하며, 사회적 기업의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사회적 기업에 투자된 자본은 성격상 비분할적이기 때문에 신탁인, 경영자, 기부자, 종업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수혜자, 지방자치단체 등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전유될 수 없다. 이탈리아와 영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이 엄격한 비영리제약 조항과 자산동결(asset lock)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이윤의 배당률과 총 배당액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11)</sup>

사회적 기업에서는 소유권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통제권도 현저히 제약된다. 사회적 기업의 통제권은 출자자본의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열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에서 소유권의 제약이 규정되고 있음에도 자본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주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절제되는 소유권(voluntarily attenuated ownership)'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기업과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지배구조: 사회적 기업의 목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의 조직화방식, 소유권의 특성 등은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통적인 기업형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하게 만든다. 사회적 기업의 이사회는 신탁인, 기부자, 경영자, 종업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수혜자,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Spear 외, 2009).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적합한 사업의 설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제공자로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본래 목적으로부터의 이탈을 감시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로 소유자에 의해서 주로 구성되는 전통적 형태의 기업 지배구조나 회원 혹은 신탁인들에 의해서 주로 구성되는 비영리기업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목적, 기업이 담당하는 재화나

11)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자본의 특성은 영국의 2005년 지역이익회사에 관한 법이나 이탈리아의 2005년 사회적 기업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이러한 자본 투자 및 이윤배분에 있어서 제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못 한다.

서비스 생산의 조직화방식, 소유권, 그리고 지배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련의 조직적 특성은 전통적인 형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업의 조직적 특성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투입요소 소유자들의 기여방식의 다양성, 사회적 기업의 성과 측정기준의 다원성(multiplicity), 자발적으로 절제된 소유권, 다중이해관계자에 의한 지배구조 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이는 기업형태 상의 일종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혁신적인 기업형태가 20세기 말에 대두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통신기술 혁명에 따른 부의 창출과 고용창출의 공간적 불일치 경향과 고용창출과 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거론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국제적 차원에서 진전된 경쟁으로부터 밀려난 장기실업자와 만성적 낙후지역이 증가하고 비인격적 거래(impersonal exchange)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증가에 따른 다중적 사회적 자본의 빈곤화현상(Sen, 2006; Ben-Ner, 2006)이 가중되었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적 진출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활동영역이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이탈리아의 경우, 교육, 사회 및 보건서비스,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환경보호, 문화 보존 및 증진, 사회적 관광, 대학이후의 교육, 문화서비스, 방과후 교육,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법과 사회적 기업법에서 활동영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공익재화나 서비스(general interest goods or services)의 생산과 공급,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여 주는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영국은 주로 낙후지역의 개발과 재건에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하여 개인 혹은 지역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자발적 민간단체나 지역공동체 조직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지역사회가 사기업체를 매입하여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거나 공공부문에서 분사된 사회적 기업도 발견된다(OTS, 2006).

농협,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은 시장을 통한 거래의 불완전성에 대한 대응으로 탄생하였지만 협동조합방식의 기업조직유지비용이 주식회사형태에 비하여 유리한 특정 재화 및 서비스부문에서 제한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기업조직형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내부조직운영원리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주 혹은 조합원의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기업통제권자가 그 이익을 수취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전통적 협동조합은 시장의 불완전성인 높은 영역에서 조합원의 편의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조합원이 출자해야 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만성적 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용이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

원이나 운영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이나 케어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협동조합보다 개방적인 협동조합방식이 요구된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방식의 사회적 기업과 주식회사방식의 사회적 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합원개념의 존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의 조합원은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후원자에게도 열려 있다. 이는 특정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해서 소유되는 전통적 협동조합과는 다른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달한 몇 나라들의 예를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2005년 현재 7,36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24만명의 유급노동자를 고용하고 3만명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330만명의 사용자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0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Borzaga and Tortia, 2009). 인구 770만명의 캐나다 퀘벡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1997년부터 2007년사이에 479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8년 현재 300개가 운영되고 있다(Girad, 2009). 이탈리아의 레가협동조합그룹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에 단위조합 수익의 3%로 코프펀드(co-op fund)를 조성하였고, 캐나다 퀘벡의 데잘딩신협은 개발자본(Capital regional et cooperatif Desjardins)과 연대저축기금(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을 조성하였다.<sup>12)</sup>

#### 4.2 마이크로파이낸스

세계은행(World Bank)의 추정에 따르면 2001년에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약 11억 명에 달하고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약 27억 명에 달한다. 이러한 극빈층들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결핍으로 실업 혹은 불완전고용상태에 놓여 있거나 농업이나 수공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자금 결핍으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배제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전통적 금융기관과 상이한 방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대안금융인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방글라데시에서 1977년에 그라민뱅크가 설립된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1997년에는 이용자가 1350만명, 2007년에는 1억 5,480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3,352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대출금은 약 260억 달러에 달하는데, 1인당 대출금액은 평균 200 달러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1969년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12) 이탈리아 레가협동조합의 지원사례에 대해서는 김태열 외(2010)와 장종익(2012)를 참조하고, 캐나다 퀘벡의 데잘딩신협의 지원사례에 대해서는 장종익(2010c)를 참조할 것.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가르친 후 1972년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유누스총재는 당시 방글라데시 인구의 80%가 절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반면에 자기가 배운 경제이론이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1976년 대나무 걸상을 수공예로 만드는 42명의 여성들에게 그의 돈 27달러를 제공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유누스총재는 그동안의 다양한 실험 등을 통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운영원리를 세우고 1983년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된다. 그 후 그라민뱅크는 급속히 확대되어 1991년에 회원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1995년에는 200만명, 2000년에는 250만명, 2008년에는 720만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라민뱅크의 모델이 정착하자 이러한 형태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전 세계 100여 개 국으로 확대되었다. 볼리비아, 칠레, 중국, 이디오피아, 혼두라스, 인도, 말레이시아, 말리, 필리핀, 스리랑카, 탄자니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그라민뱅크와 같은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이 급속히 설립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미국과 한국 등에서도 설립되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대출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저소득층에게 소액대출뿐만 아니라 저축 및 보험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이용자 중 1억 660만 명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자이고, 약 75%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3>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성장추이

연도	마이크로파이낸스 조직수	총 고객수 (백만명)	극빈 고객수 (백만명)
1997	655	16.5	9.0
2000	1,477	38.2	21.6
2005	3,056	135.2	96.2
2007	3,352	154.8	106.6

출처: Daley-Harris, 2009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은 저소득층, 심지어 극빈층에 대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존 정부통제형 개발은행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혁신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영구조, 새로운 대출실행방식, 그리고 새로운 접근방식 등을 통하여 많은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들은 90%이상의 높은 대출상환율을 기록하여 왔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일정한 수의 개인으로 구성된 그룹을 바탕으로 한 대출 및 공동책임, 소액대출 및 분할상환, 교육훈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의 제공 등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에는 점진적 대부규모의 확대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영세규모의 창업자들이 사업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고객의 75%는 여성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거의 모든 나라에

서 발견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저축 및 신용조직(rotating savings and credit association)의 장점과 신용협동조합의 장점을 흡수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개인 명의로 대출하되 계처럼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끼리 그룹을 만들어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상환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독일 라이파이젠신용협동조합이 서로 잘 알고 있는 마을 단위에서 조합을 결성하였던 원칙, 무한책임제 원칙, 그리고 구판매사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전개 등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라민뱅크가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40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그룹단위의 대출 및 공동책임제는 단위당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나 상환이행의 문제 등을 크게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룹을 결성할 때, 자율적으로 구성원을 선택하도록 하게 되면 역선택의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으며, 그룹단위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상호 감독 및 격려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관리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의 대출서비스 제공방식은 강력한 유대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라이파이젠계통의 신협과 미국 및 캐나다 신협의 운영방식과 원리상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신협도 지역, 직장, 단체 등을 바탕으로 조직화되었고, 주기적 집금업무와 소그룹 조합원모임 등을 통하여 예금 및 대출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기초로 상향식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협동조합적 접근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신협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신협은 대출자원을 조합원의 예금 즉, 지역 내 자원의 동원에 의존한 반면에 대부분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출발초기에 지역 외부, 더 나아가 선진국의 자금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해당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많은 자선재단, 세계은행, 투자은행, 뮤추얼펀드 등이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자금은 초기 대출자원의 종자돈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극빈층에 대한 이자지원 역할도 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라민뱅크는 소득이 빈곤선의 50%이하인 극빈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포함된 대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그 외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무적으로 지속가능한 대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라민뱅크는 1985-1996년 동안 외부로부터 총 175백만 달러의 보조금(직접적 기부금, 소프트 론, 자본소유를 통한 암무적 보조, 상환연기 지원금 등)을 받아 보조금이 포함된 대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과 보조는 자조 및 협동을 기본원리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신용협동조합 설립 초기에 미국신협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대출자금의 대부분은 조합원으로부터 조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의 출발은 자조 및 협동 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은 민간비영리조직이나 정부주도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화된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신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총회, 이사회, 전문적인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전문적 회계처리 및 리스크관리 등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참여와 협신이 요구되는데,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에서는 차입자가 이러한 조직유지비용을 담당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들이 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극빈층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 방식의 소유비용(ownership cost)을 감당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소유형태 및 조직운영방식 측면에서 비영리조직형태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이 신용협동조합적 소유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차입자와의 관계는 보통의 은행과 고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은 전문적인 직원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의 혁신적 노력을 통하여 신용이 배제된 극빈층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은 실패하였고, 신용협동조합적 접근방식으로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새로운 조직 및 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극빈층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 제공이 어렵다는 점이다. 민간주도의 비영리조직, 정부의 협력과 지원, 선진국의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은 실제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라민뱅크는 협동조합보다는 비영리기업조직에 가깝고 1984년에 설립된 국제적 금융NGO인 FINCA(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mmunity Assistance)가 협동조합과 가장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다. 펁카는 빈곤층 밀집 낙후지역의 자립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NGO와 마을주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자치, 사회화 과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출을 통하여 저축 및 자발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FINCA가 내전으로 공공서비스나 민간투자가 전무하고 문맹률과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페루의 남부지역 (Ayacucho)에서 마을은행을 출범하였는데,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 중에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조직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이크로파이낸스조직이 향후에 협동조합형태로 전환할지 아니면 주식회사방식으로 전환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 5. 맷음말

이상에 본고는 협동조합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시장의 불완전성이 높고 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한 19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발생한 협동조합이 시장의 실패에 대응한 하나의 기업형태임과 동시에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의 민주주의적 참여의 장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이었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결사체였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150년이상의 역사를 지닌 협동조합은 오늘날 전혀 다른 시장·기술·제도환경에 놓여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존하는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모두 과거와 같은 독과점 등의 시장실패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지역사회의 활력 유지, 환경, 전세계적 차원의 공정거래, 지구적 차원의 빈곤퇴치 등의 문제에 대처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한 조직혁신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기업과의 경쟁에서 있어서 경쟁의 차원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환경, 윤리, 공정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협동조합은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경쟁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사회에 보다 잘 기여할 수 있게 되고 협동조합의 장점도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럽과 일본, 한국, 북미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거나 새롭게 설립된 소비자협동조합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이 이러한 다차원적이지만 낯설은 차원의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및 고객과의 신뢰관계의 구축과 협동조합간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부문이 세계화와 기술혁명의 진전에 개별 협동조합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동조합의 조직형태상의 혁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레이들로박사(1980)가 30년 전에 전망하였듯이 최근에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부문은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연대 및 복합체로 구성된 협동조합 지역사회들이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 지역사회,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 지역사회 등이 잘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주지역의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형성 노력(조세훈, 2009)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형성 노력은 기존 협동조합의 주체들이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6대 가치 중에서 ‘연대(solidarity)’의 가치와 4대 윤리적 가치 중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가치를 각종 사업과 활동에서 중심적 가치로 설정하고 협동조합개발펀드 등의 형성 등 구체적인 실천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기존 협동조합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경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전통적 협동조합의 자본의 개별 지분화 경향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비율의 분할되지 않은 자본의 적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기존 협동조합이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의 설립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노력 자체가 기존 협동조합의 정체성

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 및 정부의 불완전성 혹은 비효율성의 영역과 특징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기존 협동조합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기존 협동조합의 주체들이 파악하고 새로운 종류 및 새로운 조직형태의 협동조합을 개발하고 설립을 지원할 의지가 있을 때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문은 열리게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진영이 협동조합개발펀드나 사회적 금융의 형성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사회적 기업과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사례가 시사해준다.

또한 21세기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집단재적 성격을 지닌 도시재생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의 개발, 한계노동자들의 노동통합의 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케어서비스의 제공, 개발도상국가의 만성적 금융배제층의 존재 등의 과제는 전통적인 주식회사나 전통적인 협동조합방식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서 기업조직형태의 혁신이 요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과 마이크로파이낸스라고 할 수 있다(장종익, 2010e). 사회적 기업과 마이크로파이낸스 조직 모두 협동조합적 측면과 비영리기업적 측면이 결합된 혁신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규범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들 앞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일의 조직화방식’ 상의 혁신을 도모하는 창의성이 협동조합 진영,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부문 진영에서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이크로파이낸스에서 엿볼 수 있는 점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개별적 이익(individual interest)과 협동조합의 공공적 이익(public interest) 추구사이의 조화를 목표로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구성, 지배구조, 이익배분구조 등에 있어서 특정이해관계자에 의한 소유 및 지배구조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기여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조직형태의 혁신이 요구된다. 협동조합의 목적, 자본, 노동 및 경영의 조달방식, 지배구조, 이익배분구조 등이 서로 일치될(aligned)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협동조합은 개별조합원의 이익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에서 공공적 이익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으로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김태연, 김현경, 우미숙, 전홍규, (2010), 『협동조합 도시 볼로냐를 가다』, 그물코.  
윤기태, 현성현, (2008),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NHERI 리포트 제19호, 농협경제연구소  
장종익, (2010a), “사회적 기업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신제도경제학적 고찰,” 『사회경제평론』, 제34호, pp. 173-205.

- 장종익, (2010b), “잘나가던 북미농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협동조합 네트워크』, 통권 51호, pp. 52-63,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장종익, (2010c), “연대협동조합과 비영리기업을 지원하는 캐나다 테잘딩 신협그룹,” 『협동조합 네트워크』, 통권 52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장종익, (2010d),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현단계와 과제,” 『농협경영 연구』 제39집, pp. 1-32.
- 장종익, (2010e), “세계 협동조합의 최근 흐름과 주요 특징,” 한국협동조합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0년 11월 12일, 건국대학교
- 장종익, (2011), “신용협동조합의 세계적 흐름과 주요 특징에 관한 고찰,” 『신협연구』 제56호, pp. 1-36, 신협중앙회.
- 장종익, (2012),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특징,”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주최, 제2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2012. 4.16, 충남발전연구원 대회 의실
- 조세훈, (2009), “사회적경제운동의 과제와 원주지역의 사례,” 2009 한국사회포럼 기획토론 발제문, 2009. 8. 27.
- Armendariz, B. (2009) "Microfinanc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Contracting Credal in Belgium with Adie in France," Typescript, Solvay Brussels Schools of Economics and Management, Universite Libre De Bruxelles, Belgium.
- Birchall, J.(2009), *A Comparative Analysis of Cooperative Sector in Scotland, Finland, Sweden and Switzerland*, Scotland: Highlands and Islands Enterprise.
- Cafaggi, F. and P. Iamiceli, 2009, "New Frontier in the Legal Structure and Registr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In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Noya, A. (ed.), Paris: OECD.
- Casadesus-Masanell, R. and T Khanna, (2002), "Mondragón Corporación Cooperativa(MCC)," Case Studies N9-702-457, Harvard Business School.
- Coase, R.,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pp. 386-405.
- Daley-Harris, S., 2009, *State of the Microcredit Summit Campaign Report 2009*, Washington: Microcredit Summit.
- Defourny, J., 2001,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Borzaga, C. and J. Defourney, (eds.), London: Routledge.
- Emerson, J., 2003, "The Blended Value Proposition: Integrating Social and Financial Return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45, No. 4.
- European Cooperative Banking Association (2008), *Statistics*, retrieved from [www.eurocoopbanks.coop](http://www.eurocoopbanks.coop) on Feburary 20, 2010.

- Fulton, M. E., J. Heit, and B. Fairbairn, (2006), "The Changing Landscape of Cooperatives in North Americ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Economic History Congress, Session 72, Helsinki, Finland, August 21–25, 2006.
- Hansmann, H., (1988), "Ownership of the Firm,"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4(2), pp. 267–304.
- Hansmann, H., (1996), *The Ownership of Enterpris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Laidlaw, A. F., 1980, Cooperative in the Year 2000, Agenda and Report of ICA 27th Congress, (김동희 역, 2000,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 Melnyk, G., (1985), *The Search for Community: From Utopia to a Cooperative Society*, Montreal: Black Rose Books, (김기섭 역, 『공동체탐구』, 신협중앙회, 1994)
- Miller, G., (1992), *Managerial Dilemma: The Political Economy of Hierarch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lsson, J., (1999), "Cooperative Organisational Models as Reflections of the Business Environments," *The Finish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48(4), pp. 449–470.
- Office of the Third Sector(OTS), 2006,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Scaling New Heights*, Cabinet Office, U.K.
- Whyte, W., (1991), *Making Mondragon: The Growth and Dynamics of the Worker Cooperative Complex*, Cornell University Press (김성오 역,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나라사랑, 1992).
-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2010), *International Credit Union System*, retrieved from [www.woccu.org/memberserv](http://www.woccu.org/memberserv) on March 3, 2010.